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77-000011-01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 목 차

Contents ■■

I 해수욕장(해변) 모니터링 결과/ 7	
1. 모니터링 개요 ···································	. 9
Ⅱ 2009~2012년 모니터링 대상 이행점검 결과/ 51	
1. 모니터링 개요 ···································	53
모니터링 활동 후기/ 103	
IV 부록/ 117	
1. 2013년 모니터링단 명단	118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3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I. 해수욕장(해변) 모니터링 -울진, 포항, 경주-



해수욕장(해변)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

- O 해수욕장(해변) 모니터링
 - 여름철 대표적 피서지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해수욕 장에 대한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수욕장 내 장애인편의시설, 정당한 편의제공, 기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등에 관한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목적

○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에서는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의 경우 제24조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름철 대표적인 피서지이며 최근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해수욕장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고자 함. 해수욕장 시설 접근성과 함께 물놀이 (해양스포츠 포함) 등 해수욕장 이용 등에 있어서의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재 해수욕장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 관련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여가 및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한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모니터링 기간

O 2013. 8. 8. ~ 2013. 8. 31.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7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4 모니터링 대상

- O 모니터링 대상
 - 동해안 해수욕장 모니터링(울진, 포항, 경주)
- O 대상 선정기준
 - 해수욕장은 현재 경북 울진, 포항, 경주에 위치한 12개 해수욕장으로 관할지역 내해수욕장 중 개장기간 내 이용객이 많은 순서로 선정
- O 모니터링 대상 해수욕장(해변)

지역	대상	지역	대상	지역	대상
울진	망정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		오류해수욕장
	후포해수욕장	칠포해수욕장		나정해수욕장	
	구산해수욕장	장 포항	화진해수욕장	경주	봉길해수욕장
	망양해수욕장	구룡포해수욕장		관성해수욕장	

5 모니터링 참가자

O 총 참가자 14명(활동보조인: 5 명, 모니터링 단원: 9 명)

구분		계				
下正	비(非)장애	지체 등	시각	청각·언어	내부기관	21
단원	3	5	1	_	-	9
활동보조인	5	-	-	_	-	5
계	8	5	1	_	_	14

<2> 모니터링 추진방법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2	사전설명회 개최
3	팀별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4	모니터링 대상기관 사전 협조요청
5	현장 모니터링 실시
6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7	모니터링 평가모임 개최

모니터링 추진 내용

가.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 8월 지역과제 모니터링 과제선정, 모니터링 방법 검토

나. 사전설명회 개최

O 사전설명회 개최일자

지역	일시	장소
포항	2013. 8. 12(월) 14:00	포항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경주	2013. 8. 19(월) 16:00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지회
울진	2013. 8.	유선으로 협의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9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 O 사전설명회 주요내용
- 모니터링 과제 및 목적, 수행방법 등 설명
- 팀별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방법 설명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신분증 패용 등)

다. 모니터링 해당기관 사전 협조 요청

- O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 O 현장 모니터링 활동 전 각 대상기관별로 유선 연락
-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팀별로 월 1~2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마.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체크리스트 조별 1부, 활동 보고서 개인별 1부

<3> 모니터링 항목 및 결과



1 모니터링 항목

가. 시설 접근성

O 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접수대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나.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O 해수욕장 이용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점자 및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다. 해수욕장 관련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모니터링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10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1) 해수욕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요내용

O 해수욕장(3개 지역 12개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통계 종합)

	모니터링 항목			미충족	해당없음	이행비율
	단차제거(경사로 설치 등)	12	11 (제거 6) (없음 5)	1	0	91.7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12	1	11	0	8.3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12	0	12	0	0
	_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0	0	0	0	0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여부	12	4	8	0	33.3
주차장	_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4	0	4	0	0.0
	_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 표시선의 색 구분여부	4	1	3	0	25.0
	탈의실 및 사워실 접근로 단차제거(경사로설치 등)	12	5	7	0	41.7
탈의실 및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0.65m이상, 깊이0.45m이상)	12	2	6	4	33.3
샤워실	사워기 고정장치 높이(지면으로부터 1.5m이하)	12	4	4	4	50.0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드레일 설치여부	12	1	7	4	20.0
	장애인화장실 설치여부	12	11	1		91.7
	_남녀구분 설치	11	6	5		54.5
	화장실출입구 전면 점형블록 설치	12	8	4	0	66.7
	_점형블록 훼손여부	8	1	7	0	12.5
	화장실내부(대소변칸)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12	5	7	0	41.7
	화장실내부(대변기칸) 통과유효폭(0.8m 이상)	12	9	3	0	75.0
화장실	화장실내부(대변기칸) 회전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1.8m이상)	12	10	2	0	83.3
	대변기의 높이(0.4m 이상, 0.45m 이하)	12	12	0	0	100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 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	12	4	8	0	33.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 작동여부	12	11	0	1(없음)	100
	세면대 적정높이	12	10	0	2(없음)	100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12	10	0	2(없음)	100
정당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 으로 된 이용 안내책자 제공여부	12	0	12	0	0
편의제공	해양스포츠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수화통 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여부	12	0	12		0
웹사이트 정보접근	키보드(tab키와방향키,enter키사용)만으로이용 정보 확인가능	12	7	0	5	100
정보접근 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화면 등의 제공	12	0	7	5	0

2) 점검결과

가) A해수욕장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 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 이 있고, 경 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0			* <u>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u> 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주출입구	2 주출입구 바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0		
	및 접근로	3.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 여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 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3-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해수욕장 시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0		
접근성	주 차	41.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장	42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선의 색이 일반 주치구역 선의 색과 구분되어 있음				
	탈	5. 탈의실 및 샤워실에 접근이 가능하 도록 턱 미설치 또는 제거 했음.	0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의실 및 샤	5-1. 하부 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된 세면대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위 실	5-2. 샤워기 고정 장치 등이 지면으로 부터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0			
		5-3.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0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6-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 치되어 있음		0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 음	0			1202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 록이 훼손되어 있음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 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 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화 장 실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m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 "아니오"인 경우. - 너비m - 깊이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 이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 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 적으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 체어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 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 체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 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 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5	티고 있	는 경우	-에만 5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 *
해양스포 츠 등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 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하거나 확대경(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확대경(돋보기) □ 기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6-1. 요구 방식 (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화상으로 사전 요청 등)							
	16-2. 제공 방식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	령 / 7	집으로 경	농부 등)			
	16-3. 제공 기간일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필요성을 못	上끼ュ	고, 요구	'하는	사람이 없어서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제	공자 : 🖥	근무자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 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을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 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기타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	접 요구	· - / 전호	사상으로	로 사전 요구 등 <u>)</u>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	ի에 요	청 / 화	상전화	기 구비 등)			
	17-4. 제공 기간일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요구하는 시	라이	없어서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및 제공	자 : 근	무자				
웹페이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 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는 경			
사용 및 정보제공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 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0		- 전면 안내립페이지가 없는 경 우, "해당없음"표기			
기타	20. 그밖에 전반적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여 기재 가능) - 주출입구가 원만하여 휠체어 사용이 편		변한 사형	} 및 보	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			

- 주출입구 경사로가 설치돼있어 휠체어 접근이 편리하지만 모래사장에서 바닷 가로 가는 다른통로는 없음.
-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음
- 해양 스포츠를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제공은 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준 비돼 있지 않다고 함
- A해수욕장 홈페이지는 따로 없지만 ○○군 홈페이지에 기본정보와 관광정보 등이 게시돼있음

나) B해수욕장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주 출 이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 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0	* <u>주출입구에</u> 계단이나 <u>턱이</u> <u>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u>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무	2 주출입구 바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0		
	및 접근로	3.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점자안내판 □ 촉지도식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기타
		3-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0			
해 수욕 장 시설 접근성	주 차 장	4-1.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0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의 색이 일반 주차구역 선의 색과 구분되어 있음	0			
	탈의실	5. 탈의실 및 샤워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턱 미설치 또는 제거 했음.		0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일 및 샤 워	5-1. 하부 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 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된 세면대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 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실	5-2. 샤워기 고정 장치 등이 지면으로부 터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0			
		5-3.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 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0		
	화	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장 실	6-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 되어 있음		0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 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 이 훼손되어 있음				* 사진 첨부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 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 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 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 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m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 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 로 표기 * "아니오"인 경우. - 너비m - 깊이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 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 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 으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 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 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 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되고	고 있는	경우이	네만 덤	당자에게 직접 질의 *
	16.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스 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 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 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하거나 확대경(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공 하면 "예"로 표기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확대경(돋보기) 기타
해양스 포츠 등	16-1. 요구 방식 (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회	· 상으로	. 사전	요청 등)
이용에	16-2. 제공 방식 <u>(</u>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집으	로 송	부 등)	
있어서 의	16-3. 제공 기간일				_
정당한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필요성을 못 느 ?	격서			
편의제 공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제공기	자: 근두	'자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 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 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기타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요구 /	/ 전화/	상으로	사전 요구 등)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요청	/ 화싱	·전화기	<u> 구비 등)</u>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7-4. 제공 기간일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요구하는 사람	이 없	어서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공자 : 근무자									
웹페이 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기거 시네에레시키키 서난 거					
사용 및 정보제 공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 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 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0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는 경 우, "해당없음" 표기					
	20. 그밖에 전반적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기재 가능)	불편한	사항 및	빚 보완	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타	1) 주출입구가 평탄하여 이용하기에 편리함 2) 샤워실이 최근에 시설되어 편리하게 설치는 되어있으나 ,경사로 미설치로 인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함.									

- 주출입구는 단차가 없어 휠체어 접근이 편리하지만 모래사장에서 바닷가로 가 는 다른통로는 없음.
- 장애인 주차구역은 설치돼있지만 입식 표지판이 없음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음
-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돼 있음. 화장실 앞 점형블럭이 없음.
- 해양 스포츠를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제공은 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준 비돼 있지 않다고 함
- B해수욕장 홈페이지는 따로 없지만 ○○군 홈페이지에 기본정보와 관광정보등 이 게시돼있음

다) C해수욕장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ス十支吉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 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0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 이 없는 경우 "해당없 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입	2. 주출입구 바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circ			
	구 및 접근로	3.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 기 - '예'인 경우,
		3-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0		
해수욕장 시설	주 차	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접근성	장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의 색이 일반 주차구역 선의 색과 구분되어 있음				
	탈의	5. 탈의실 및 샤워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턱 미설치 또는 제거 했음.	0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실 및 샤	5-1. 하부 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 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된 세면대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위 실	5-2. 샤워기 고정 장치 등이 지면으로부 터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0			
		5-3.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 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0		
		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화 장	6-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 되어 있음		0		
	실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 음	0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 록이 훼손되어 있음				* 사진 첨부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설치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 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m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야도 해당면 "예'로 표기 * "아니오"인 경우. - 너비m - 깊이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 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 적으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 어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되고	있는 기	경우에민	난 담당기	
	16.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스 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자 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 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하거나 확 대경(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확대경(돋보기) 기타
해양스포 츠 등	16-1. 요구 방식 (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	/ 전화/	상으로 /	사전 요	청 등)
이용에	16-2. 제공 방식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 집으:	로 <u>송</u> 부	등)	
있어서의 정당한	16-3. 제공 기간일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요구하는 사람이	া প্রম:	ผ		
편의제공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자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필 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 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기타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_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요정 /	화상전	<u> 1</u> 화기 -	<u> </u>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7-4. 제공 기간일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필요성을 못느껴 ?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		그무자		
웹페이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10/11.1		0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
사용 및 정보제공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0	는 경우, "해당없음"표기
기타	20. 그밖에 전반적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여 기재 가능)	불편한 /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
	 주출입구 접근로가 도로와 근접하게 9 편의시설은 미비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있음.	장애인	이 접근	근하기에는 편리함

- 주출입구는 단차가 없어 휠체어 접근이 편리하지만 모래사장에서 바닷가로 가 는 다른 통로는 없음.
- 장애인 주차구역 없음
- 탈의실, 샤워실 입구 단차가 없고, 샤워기 높이 적정하지만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힘들고 샤워실 핸드레일 없음.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음
- 해양 스포츠를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제공은 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준 비돼 있지 않다고 함
- C해수욕장은 ○○군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도 없음.

라) D해수욕장

실측 결과, 편의제공) 다출입구에 계단이나 턴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베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중 높이
ly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 하어 있으면 "예"로 표기 '예"인 경우, □ 점자안내판 □ 촉지도식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기타
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u>나내판'을 체크한 경우,</u> 해당없음'표기
웨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 <u>3</u> cm 령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는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아니오'인 경우, 높이m 깊이m
-진 첨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 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 되어 있음		0	BA LI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 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 여 0.8m이상임		0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 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아니오"인 경우. - 너비m - 깊이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 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 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 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 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되고	있는 경	병우에만	담당지	-에게 직접 질의 *			
해양스	16.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스포 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자자 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하거나 확대경 (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 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확대경(돋보기) □ 기타			
포츠 등	16-1. 요구 방식 <u>(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u>	전화상	으로 사	전 요청	등)			
이용에 있어서	16-2. 제공 방식 <u>(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u>	집으로	송부 등	-)				
의	16-3. 제공 기간일							
│ 성당한 │ 편의제	정당한 편의제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제공자:	근무자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필 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기타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요	구 / 전	过화상으.	로 사전	요구 등)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	요청 /	화상전회	 -기 구:	비 등)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7-4. 제공 기간일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공자 : 근무자								
웹페이 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				
사용 및 정보제 공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0		' 는 경우, "해당없음"표 기				
	20. 그밖에 전반적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불 기재 가능)	·편한 시	항 및 보	-완할 /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타	기세 기호) 1) 주출입구 접근로가 평탄하지 못하며,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불편함 2) 화장실 출입구 접근로가 조립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불편함.								

- 해수욕장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임
- 해양 스포츠를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제공은 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준 비돼 있지 않다고 함
- D해수욕장 홈페이지는 따로 없지만 ○○군 홈페이지에 기본정보와 관광정보 등이 게시돼있음

마) E수욕장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주 구 출 이 대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 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0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 이 없는 경우 "해당없 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부	2 주출입구 비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0		
	및 접근로	3.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 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3-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관', '촉지도식 안내관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_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0			
	주 차	4-1.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0		
해수욕장 시설 접근성	장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의 색이 일반 주차구역 선의 색과 구분되어 있음		0		
н с о	탈의	5. 탈의실 및 샤워실에 접근이 가능하도 록 턱 미설치 또는 제거 했음.	0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실및샤이	5-1. 하부 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 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된 세면대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워 실	5-2. 샤워기 고정 장치 등이 지면으로부 터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0		
		5-3.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 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0		
		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화	6-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 되어 있음	0			
	장실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 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 이 훼손되어 있음		0		
	장	되어 있음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		0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 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 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m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아니오"인 경우. - 너비m - 깊이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 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 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 으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 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되	고 있는	경우에민	<u></u> 담당지	에게 직접 질의 *				
	16.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스 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 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 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하거나 확대경(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확대경(돋보기) □ 기타				
	16-1. 요구 방식 (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화상으로 사전 요청 등)								
해양스 포츠 등	16-2. 제공 방식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집으	로 송부	등)					
이용에	16-3. 제공 기간일								
있어서 의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필요성을 못 느				없어서				
정당한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 제공지	· : 근무지	\ \					
편의제 공 -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 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기타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요구 등)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여	요청 /	' 화상전	화기 구녀	비 등)				
	17-4. 제공 기간일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요구하는 사림	이 없어	서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공자 :	근무자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웹페이 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
사용 및 정보제 공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 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0		는 경우, "해당없음" 표 기
기타	20. 그밖에 전반적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기재 가능)	불편한	사항 및 .	보완할 /	·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 장애인전용주차장 입식 표지판 미설치됨
- 모래사장 출입구 경사로가 잘 되어 있어서 모래사장까지 휠체어 진입가능함.
- 진입경사로와 모래사장 위 휠체어가 빠지지 않도록 평면판을 설치해 두었음
- 샤워실은 출입구에서 입구안으로 가는 턱이 있어서 휠체어 사용 불편함.
- 위생시설(대변기) 수평,수직(L자형)손잡이 설치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장애인 접근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중



▶해수욕장 주출입구 경사로



▶해수욕장 모래사장 휠체어 이동로



▶해수욕장 장애인화장실 입구



▶해수욕장 장애인화장실 내부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26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바) F해수욕장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주 출 이 구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 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0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 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끝	2 주출입구 비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0		
	및 접근로	3.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 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 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3-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0		* 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주 차 장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0		
		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해수욕장 시설 접근성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의 색이 일반주 차구역 선의 색과 구분되어 있음				
省につ	탈의실	5. 탈의실 및 샤워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턱 미설치 또는 제거 했음.		0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및 샤워	5-1. 하부 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 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된 세면대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실	5-2. 샤워기 고정 장치 등이 지면으로부 터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0		
		5-3.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드 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0		
		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화	6-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되 어 있음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되어 있음				* 사진 첨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0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 <u>0.6</u> m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 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아니오"인 경우. - 너비 <u>0.8</u> m - 깊이 <u>0.7</u> 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 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 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 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 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만 담당	자에게 직접 질의 *					
	16.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스포 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자자 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하거나 확대경 (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 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확대경(돋보기) □ 기타					
	16-1. 요구 방식 <u>(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화상으로 사전 요청 등)</u>									
해양스	16-2. 제공 방식 <u>(</u>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집으로 송부 등)									
포츠 등 이용에	16-3. 제공 기간일									
있어서 의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필요성을 못 느껴	서								
정당한 편의제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제공기	아: 근무	자						
공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필 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요	요구 /	'전화성	}으로 사	전 요구 등)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요청	/ 화상	전화기 -	구비 등)					
	17-4. 제공 기간일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요구하는 사람이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	공자	: 근무지	}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웹페이 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과려 아내웨데이지가 어		
사용 및 정보제 공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0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 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기타	20. 그밖에 전반적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 [±] 기재 가능)						
,,,,,	1) 오래된 해수욕장이고 건물이 오래되어 개 2)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전혀 없음	선되	지 않고	있음			

- 주출입구 턱이 없어 접근은 용이하지만 장애인 주차장, 화장실은 설치돼있지 않음
- 샤워장은 입구가 좁아 출입하기 어려움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전혀 없음
- 휠체어, 시각장애인은 바닷가 까지 진입하기 불가능함.
- 해수욕장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없음



▶해수욕장 샤워실 입구

사) G해수욕장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주 <u>구</u> 출 이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 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0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부	2 주출입구 바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및 접근로	3.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 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 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점자안내판 □ 촉지도식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기타
		3-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0		* 6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주 차 장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0		
		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해수욕장 시설 접근성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의 색이 일반 주차구역 선의 색과 구분되어 있음				
当にる	탈의실	5. 탈의실 및 샤워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턱 미설치 또는 제거 했음.		0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및 샤 워	5-1. 하부 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 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된 세면대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실	5-2. 샤워기 고정 장치 등이 지면으로부 터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0		
		5-3.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드 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0		
		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화	6-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되 어 있음	0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 이 훼손되어 있음		0		* 사진 첨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 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 되어 있음		0	献百	(설득 설파, 원의제등)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m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 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아니오"인 경우. - 너비m - 깊이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 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 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 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 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면	난 담당지	l에게 직접 질의 *				
	16.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스포 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자자 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하거나 확대경 (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 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확대경(돋보기) □ 기타				
	16-1. 요구 방식 (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화상으로 사전 요청 등)								
해양스	16-2. 제공 방식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집으로 송부 등)								
포츠 등	16-3. 제공 기간 일								
이용에 있어서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의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제공지	ㅏ : 근무기	나					
정당한 편의제 공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필 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기타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화상으로 사전 요구 등)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	요청 ,	/ 화상전	화기 구	비 <u>등)</u>				
	17-4. 제공 기간일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핖요성을 못느껴서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	공자:	근무자							
웹페이 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					
사용 및 정보제 공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0		는 경우, "해당없음"표 기					
	20. 그밖에 전반적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기타	1) 주출입구 접근로가 주차장과 해수욕장과의 거리가 있음. 2) 장애인 화장실은 모래사장과 멀리 떨어져있어 이동에 어려움. 3) 샤워실 이용이 불편하며 이용자가 별로 없음									

- 장애인 주차구역 없고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거리가 있음
- 장애인 화장실은 점형블럭, 수직,수평손잡이 등 시설은 잘 돼있지만 이동거리 가 길어 접근이 어렵고 모니터링 당시 고장수리 중이었음.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전혀 없음
- 해수욕장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없음







아) H해수욕장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주 출 입 구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 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0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회사로 기타
	입 그	2 주출입구 바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0		
	ㅜ 및 접근로	3.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 기 - '예'인 경우, □ 점자안내판 □ 촉지도식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기타
		3-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축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주 차 장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0		
해수욕장		41.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시설 접근성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의 색이 일반 주차구역 선의 색과 구분되어 있음				
	탈의	5. 탈의실 및 샤워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턱 미설치 또는 제거 했음.		0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 <u>3</u> 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실 및 샤워	5-1. 하부 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 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된 세면대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실	5-2. 샤워기 고정 장치 등이 지면으로부 터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0		
		5-2.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 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0		
		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화 장	6-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되 어 있음		0		
	실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 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 이 훼손되어 있음		0	取百	(설득 설파, 편의제공) * 사진 첨부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 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 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 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 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m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 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아니오"인 경우. - 너비m - 깊이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 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 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 으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 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되고	그 있는	경우에만	난 담당지	에게 직접 질의 *
	16.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스 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 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 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하거나 확대경(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확대경(돋보기) □ 기타
해양스포	16-1. 요구 방식 (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강으로 스	·전 요청	등)
츠 등 이용에	16-2. 제공 방식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집으:	로 송부	등)	
있어서의	16-3. 제공 기간일				
정당한 편의제공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요구하는 사람 이		-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제공자	: 근무지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 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기타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화상으	으로 사전	<u>! 요구 등)</u>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요청 / 화상전화기 구비 등)									
	17-4. 제공 기간일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요구하는 사람	이 없어?	ᅥ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공자 : 근무자									
웹페이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					
사용 및 정보제공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 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 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0							
기타	20. 그밖에 전반적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7 121	1) 주출입구 접근로가 평탄하지 못하며,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불편함 2) 화장실 출입구 및 샤워장등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장애인주차구역은 바닥표시는 돼있지만 입식표지판은 없음
- 장애인 화장실은 있으나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음
- 샤워실은 진입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함.
- 휠체어장애인은 모래사장 접근이 불가능함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정당한 편의제공은 전무함



중 임



▶장애인화장실-청소도구 보관실로 사용 ▶샤워실 진입로-턱이있어 휠체어 접근 어려움

자) I해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주 출 이 그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 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0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 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입	2 주출입구 비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0		
	구 및 접근로	3.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 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 기 - '예'인 경우, □ 점자안내판 □ 축지도식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기타
		3-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7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0			
해수욕장	주 차 장	41.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0		
시설 접근성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의 색이 일반 주차구역 선의 색과 구분되어 있음		0		
	탈의	5. 탈의실 및 샤워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턱 미설치 또는 제거 했음.	0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실 및 샤이	5-1. 하부 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 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된 세면대 있음.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위 실	5-2. 샤워기 고정 장치 등이 지면으로부 터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5-3.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드 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화 장	6-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되 어 있음	0			
	실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 이 훼손되어 있음		0		* 사진 첨부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 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 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m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 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아니오"인 경우. - 너비m - 깊이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 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 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 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 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면	<u></u> 담당	자에게 직접 질의 *				
	16.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스 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자 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 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하거나 확 대경(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 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확대경(돋보기) □ 기타				
해양스포	16-1. 요구 방식 <u>(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u>	′ 전화	상으로 /	사전 요	<u>청 등)</u>				
츠 등	16-2. 제공 방식 <u>(</u>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 집으	로 송부	등)					
이용에 있어서의	16-3. 제공 기간일								
정당한 편의제공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필요성을 못느껴	서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제공지	나 <u>: 없</u> 음	<u></u>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필 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 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기타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의	요구 /	전화상.	으로 사	전 요구 등)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요청 / 화상전화기 구비 등)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7-4. 제공 기간일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필요성을 못느껴	1서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	공자	: 없음						
웹페이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				
사용 및 정보제공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0	는 경우, "해당없음" 표 기				
	20. 그 밖에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기타	- 샤워장 내부는 해수욕장 폐장후 모니터링	- 샤워장 내부는 해수욕장 폐장후 모니터링 하여 점검하지 못했음							

-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표시선의 색이 바래있고 입식표지판 미설치로 식별이 어려움
- 전체적으로 개보수작업이 실행되었지만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 없음.
- 해변진입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장애인의 바다 진입은 불가한 상태임.



▶화장실 입구



▶해변 장애인 주차구역-입식표지판 미설치

차) J해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주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 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0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 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 출입 구	2 주출입구 바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0		
	T 및 접근로	3.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 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 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 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점자안내판 □ 촉지도식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기타
		3-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 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 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 음' 표기
	주 차 장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0		
해수욕장 시설 접근성		4-1.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0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의 색이 일반 주차구역 선의 색과 구분되어 있음		0		
	탈의	5. 탈의실 및 샤워실에 접근이 가능하도 록 턱 미설치 또는 제거 했음.		0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실 및 샤	5-1. 하부 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 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된 세면대 있음.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 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위 실	5-2. 샤워기 고정 장치 등이 지면으로 부터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5-3.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 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화	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장실	6-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 되어 있음	0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 이 훼손되어 있음	0			* 사진 첨부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 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 치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 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m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 로 표기 * "아니오"인 경우. - 너비 <u>1.0</u> m - 깊이 <u>1.4</u> 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 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 으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 어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되고	그 있는	: 경우여	네만 담	당자에게 직접 질의 *
해양스포 츠 등 이용에 있어서의	16.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스 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 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 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하거 나 확대경(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공 하면 "예"로 표기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확대경(돋보기) 기타
정당한 편의제공	16-1. 요구 방식 <u>(</u> 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호	화상으로	릭 사전	요청 등)
	16-2. 제공 방식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집	으로 송	부 등)	
	16-3. 제공 기간일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필요성을 못느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세공	자 <u>:</u> 압	<u>었음</u>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 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 하면 "예"로 표기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화	상으로	사전 요구 등)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야] 요청	/ 화성	·전화기	구비 등 <u>)</u>			
	17-4. 제공 기간일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u>:</u> 필요성을 못느	-껴서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공자	: 없음	<u>)</u>				
웹페이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코급 아비에페시키키 어느			
사용 및 정보제공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는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 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الحال	20. 그 밖에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보완	할 사	항은? (/	사진 등	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기타	- 샤워장 내부는 해수욕장 폐장후 모니터	링 하여	겨 점검	하지 돗	근했 음			

- 주차장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휠체어 이용자는 불편함.
- 주차장 및 들어가는 입구는 전체적인 보수를 통하여 이용하기가 용이한 편이 였으나 시각장애인은 주차장에서 해변까지 단독보행은 불가능함
- 샤워장, 화장실 진입 시 단차가 있고 경사로가 심해 휠체어 이용자는 사용할 수 없음
-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은 통로 배수로에 빠질 수 있어 해변 진입이 불가능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전혀 없음



▶주차장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문이안쪽으로 열려 휠체어접근 어려움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41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카) K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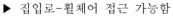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ス ㅜ 출한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 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0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
	입 구	2 주출입구 바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0		
	- 및 접근로	3.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 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점자안내판 □ 촉지도식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기타
		3-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 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 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 음' 표기
	주 차 장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0			
		41.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0		
해수욕장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의 색이 일반 주차구역 선의 색과 구분되어 있음		0		
시설 접근성	탈의실	5. 탈의실 및 샤워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턱 미설치 또는 제거 했음.		0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일 및 샤워	5-1. 하부 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 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된 세면대 있음.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 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실	5-2. 샤워기 고정 장치 등이 지면으로부 터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5-3.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 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화	6-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되 어 있음	0			
	장실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 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 이 훼손되어 있음		0		* 사진 첨부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 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 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 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m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 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 로 표기 * "아니오"인 경우. - 너비m - 깊이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 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 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 으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 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만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 *									
	16.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스 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 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 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하거나 확대경(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해양스	16-1. 요구 방식 <u>(</u> 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화상으로 사전 요청 등)									
포츠 등	16-2. 제공 방식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집으	로 송부	- 등)						
이용에 있어서	16-3. 제공 기간일									
의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필요성을 못느?									
정당한 편의제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제공지	<u>: 없</u>	<u>음</u> N						
구 PO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 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 기타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화상으로 사전 요구 등)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요청	/ 화상	전화기	구비 등)					
	17-4. 제공 기간일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필요성을 못느?	<u> 겨서</u>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기	세공자	<u>: 없음</u>					
웹페이 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 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코크 아네에페시키키 어느			
사용 및 정보제 공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 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 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0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표기			
기타	20. 그 밖에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 샤워장 내부는 해수욕장 폐장후 모니터링 하여 점검하지 못했음							

-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구분 돼 있고 휠체어 이용자도 사용가능하지만 입구 배수로 철망 판에 휠체어 앞바퀴가 빠질 수 있어 위험함.
- 장애인주차장은 없음
- 해변으로 향하는 길은 휠체어 이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정비해놓았지만 시 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안내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편의제공 이 되어 있지 않으며 안내책자 또한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당한 편의제공은 없었음.







타) L해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주 출 애 구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 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0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입 그	2 주출입구 비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0		
	ㅜ 및 접근로	3.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 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3-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주 차 장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0		
		41.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입식 안내판설치		0		
해수욕장 시설 접근성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의 색이 일반 주차구역 선의 색과 구분되어 있음		0		
HL O	탈의실	5. 탈의실 및 샤워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턱 미설치 또는 제거 했음.	0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 기타
	일 및 샤워	5-1. 하부 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 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된 세면대 있음.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실	5-2. 샤워기 고정 장치 등이 지면으로부 터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음.				
		5-3.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 또는 핸 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				
		6.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화	6-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되 어 있음	0			
	장 실	7.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 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7-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 이 훼손되어 있음		0		* 사진 첨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 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 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9.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 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m					
	10.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 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아니오"인 경우. - 너비m - 깊이m					
	11.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 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12.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 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3.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 으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4.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 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15.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 아래 질문은 해양스포츠가 진행되고	! 있는	경우에만	담당지	·에게 직접 질의 *					
	16. 해수욕장 내 이용객이 참여 가능한 해양스 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을 점자 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 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하거나 확 대경(돋보기)를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 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확대경(돋보기) □ 기타					
	16-1. 요구 방식 (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 전화상으로 사전 요청 등)									
해양스	16-2. 제공 방식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 집으로 송부 등)									
포츠 등	16-3. 제공 기간일									
│ 이용에 │ 있어서	16-4. 제공하지 않는 이유 <u>: 필요성을 못느껴서</u>									
의	16-5. 대체수단으로써 '대독' 등 제공여부 및	제공자	: 없음							
정당한 편의제 공	17. 청각장애인이 해양스포츠 서비스 이용에 필 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 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17-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ડ	요구 /	전화상으	로 사전	 면 요구 등)					
	17-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요청 /	화상전화	화기 구	비 등)					
	17-4. 제공 기간일									
	17-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필요성을 못느 ?	겨서								
	17-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공자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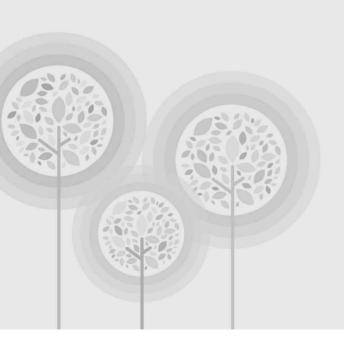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웹페이 지	18.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관련 안내웹페이지가 없
사용 및 정보제 공	19.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의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해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0	는 경우, "해당없음"표 기
	20. 그 밖에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 (사진	등을 추	첨부하여 기재 가능)
기타	- 샤워장 내부는 해수욕장 폐장후 모니터링	하여	점검하지	못했 \	<u> </u>

- 해수욕장 자체가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 시설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장애인의 해변진입 또한 전혀 배려되지 않은 상태임.(시민과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설계를 충분한 준비 후 설계가 필요함)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당한 편의제공이 전혀 없음



▶휠체어는 해변접근이 어려움

Ⅱ. '09~12 모니터링 결과 이행점검 모니터링 -대구, 구미, 상주, 문경, 예천-



'09~12년 모니터링 대상 기관 이행점검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

- O 공공도서관 모니터링(2009~2012년 모니터링 과제)
- O 2009~2012년 모니터링 대상 시설 이행 모니터링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모니터링 대상을 중심으로 결과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당시 기준미달 또는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공되지 않았던 편의시설에 대해 현재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 2009~2012년 모니터링 영역 및 대상 목록

2) 모니터링 목적

○ 2008년 4월 11일 시행이후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5년 동안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서울, 부산, 광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 왔고, 그결과 모니터링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노력 등으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냈음. 하지만 해당 연도 내 진행되지 않은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한 편의제공 사례'를 발굴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대상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권증진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모니터링 기간

O 2013. 8. 8. ~ 2013. 9. 15.

4 모니터링 대상

O 대상 선정기준

-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 제2조(정의) 제4호의 공공도서관 4곳
- 2009~2012년 모니터링 결과 이행 모니터링 대상 기관은 중 규모, 공공 성, 지역,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팀 또는 개인별로 선정

O 모니터링 대상(2009~2012년 모니터링)

구분	대상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구미(2)	경상북도도립 구미도서관
T-1(2)	인동시립도서관
	구미시상모정수도서관
상주, 문경, 예천, 대구	1 지역 내 문화행사(사전 편의제공 접수, 당일 편의제공 여부 ② 체육시설(월드컵경기장, 시민체육관 등) ③ 구청, 군청, 읍사무소, 주민센터, 보건소 ④ 공원, 유원지, 수목원 ⑤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공공기관 운영 또는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운영) ⑥ 금융기관(금융기관 이용 및 ATM기) ① 버스정류장(저상버스 노선 포함) ⑧ 문화시설(공연장 등) ⑨ 의료기관(종합, 요양, 한방)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참가자 33명(활동보조인: 8명, 모니터링 단원: 27명)

구분		계				
下正	비(非)장애	지체 등	시각	청각·언어	내부기관	71
단원	15	8	2	2	-	27
활동보조인	6	-	-	-	-	6
계	21	8	2	2	-	33

<2> 모니터링 추진방법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2	사전설명회 개최
3	팀별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4	모니터링 대상기관 사전 협조요청
5	현장 모니터링 실시
6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7	모니터링 평가모임 개최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가.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 8월 지역과제 모니터링 과제선정, 모니터링 방법 검토

나. 사전설명회 개최

O 사전설명회 개최일자

지역	일시	장소
구미	2013. 8. 8(목) 13:00	구미시 형곡동
상주, 문경, 예천	2013. 8. 20(화) 11:00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대구	2013. 8. 22(목) 10:30	국체보상운동기념관

- O 사전설명회 주요내용
- 모니터링 과제 및 목적, 수행방법 등 설명
- 팀별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방법 설명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신분증 패용 등)

다. 모니터링 해당기관 사전 협조 요청

- O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 현장 모니터링 활동 전 각 대상기관별로 유선 연락
-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팀별로 월 1~2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마.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체크리스트 조별 1부, 활동 보고서 개인별 1부

<3> 모니터링 항목 및 결과



1 모니터링 항목

가. 공공도서관

- 시설접근성 : 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접수대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O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점자 및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O 도서관 관련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모니터링

나. 2009~2012년 모니터링 결과 이행 모니터링

○ 2009~2012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이 미흡하거나 제공되지 않 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54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가. 공동도서관 모니터링 결과 및 주요내요

- 1) 구미지역 도서관
 - O 선정 이유(구미지역 공통)
 - 최근 구미시에 공공도서관이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및 정당 한 편의제공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니터링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음.
 - O 2012년 이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구미지역 공통)
 - 구미지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하여서, 전년도인 2012 년 영남대학교 도서관과 비교해서 모니터링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2012년 영남대학교 도서관 모니터링 내용	2013년 구미지역도서관 모니터링내용
시각장애인의 위한 별도의 문서 확대 장치를 보유하지 않아 도서관 내에서 문서검색이나 도서열람이 어려웠음	•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부족함 : 화상전화기, 확대 경 등이 없음(구미도립도서관 제외)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수화통 역제공은 되지 않았음. 추후 화상전화 기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 였음.	•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모든 도서관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없었음. 가까운 지역 센터 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설명함. 곧 시 정하기로 약속함.
 장애학생지원센터나 중앙도서관이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도적, 질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법, 제도틀에만 맞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질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의 편의시설이나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해 보였음. 	 구미지역공공도서관 경우에 장애인편 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지만 시· 청각 장애인의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은 부족했음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모든 도서관의 도서자동반납기의 높이가 휠체어 이용 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구미도립도서관은 타도서관에 비해 시 각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 음

가) A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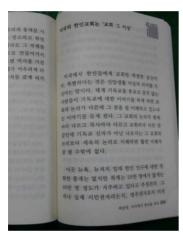
항목		점검사항	예	아 니 오	해당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음(2cm이하)	0			* 높이차가 있을 경우 단 차높이cm
		1-1.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 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 음				*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 가 2cm 이상이라도 휠 체어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면 "해 당없음"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1-2.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작동 가능 함				*작동 모습 사진 첨부
		1-3. 경사로가 있는 경우 기울기	높이 길이 기울	: 21	37_ <u>[1</u>]/길이	*100) : <u>16.7</u>
		1-4. 경사로가 있는 경우 손잡이가 설치되 어 있음	0			* 손잡이가 설치된 곳 ■ 양쪽 측면 □ 한쪽 측면 □ 기타
	건 물 주	1-5. 다른 출입구를 통해 휠체어로 출입할수 있도록 해당 출입구의 단차제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설치가 되어 있음				* 다른 출입구의 예: 민원실, 후문 등
시설 접근	주출입구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 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0.8m 이상)	0			* 통과유효폭 <u>1.6</u> m
성	및 접근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휠체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음(1.2m이상)	0			* 유효거리란, 출입구탁-건 물입구(문) 또는 경사로 상단끝-입구(문)간의 거 리 5.5 m
	呈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 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5.5 III
		4-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되지 않고 온 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0			* 사진 첨부
		4-2. 화분이나 깔판 등으로 유도블록이 덮 여 있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		0		
		5.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 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을 설 치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 로 표기 ■ 점자안내판 ■ 촉지도식 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기타
		5-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편의 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5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 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 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 로 표기 다 자동문 대 여닫이문 다 미닫이문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0		
출입자확	8. 이용자 확인 구간(학생증을 스캔하여 출입 할 수 있는 허리높이까지 설치된 게이트) 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확인	입자 구간이]치된	* 주출입구 쪽의 이용자 확 인구간 체크
인 구 간	8-1. 휠체어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게이 트를 따로 마련하고 있음.		관임.	
	9.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1.2m이상)	0		* 유효폭 4.3 m
복 도 및	9-1. 의자, 화분, 휴지통 등으로 통로 유효 폭이 좁혀져 있음		0	* 유효폭 확보를 위해 복 도 및 통로를 좁히는 의 자, 화분 등을 치울 것을 요청
통로 등	10. 기관이 2층 이상에 있거나, 또는 2층 이상인 경우, 이동에 필요한 엘리베이 터가 설치되어 있음	0		* 기관이 1층으로 된 경 우 '해당없음' ■ 엘리베이터 □ 휠체어리프트 □ 기타
	10-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 작동 가능함	0		*작동 모습 사진 첨부
	11.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11-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0		
	12.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12-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되어 있음		0	* 사진 첨부
	13.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 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 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 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 는 경우 "예"로 표기
화 장	14.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 m
실	15.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 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아니오"인 경우. - 너비 m - 깊이 m
	16.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17.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8.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 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ı	I			
		19.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20.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 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2,3 흥 자	21. 이용자 확인 구간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0			* 2, 3층 자료실 안으로 들 어가는 쪽의 출입자 확인구 간		
	료 실	21-1.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이지만 장애 물로 인하여 통과가 어려움		0				
	입구	21-2. 휠체어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게이 트를 따로 마련하고 있음.		0				
	도 서	22. 도서대출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 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0			* '아니오'인 경우, 도서대출대 높이 m		
	대 출 대	23. 도서대출대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어 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 치되어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 깊이 m		
	열 람	24. 열람실 책상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 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0			* '아니오'인 경우, 열람실 책상높이 m		
	실 책 상	25. 열람실 책상의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 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 치되어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 깊이 m		
서비스		26. 자료검색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 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0			* '아니오'인 경우, 자료 검색대 높이 m		
이용에 있어서 의 정당한 편의제 공	자 료 검 색	27. 자료검색대의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 치되어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 깊이 m		
	· 대	28.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검 색도구의 음성지원기능 등이 제공되거 나 키보드만으로 자료검색이 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 기 - '예'인 경우, □ 음성지원 기능 □ 기타 □ 키보드로 검색가능		
		* 아래 질문은 기관의 담	당자이]게 직	접 질의			
	- 1 3	각장애인이 자료실 이용을 위하여 리플렛 등을 요구할 경우,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 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 공가능함.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 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기타		
	29-1	l. 요구 방식 (직원에게 직접 요구)						
	29-2. 제공 방식 (기관에서 직접 수령)							

	29-3. 제공 기간 당일									
	29-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29-5. 대체수단으로써 '활동보조인력' 제공여부 및	ļ 제공	자							
	30.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저 공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화상전화 □ 기타					
	30-1. 화상전화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 작동함				* 1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30-2. 요구 방식 ()									
	30-3. 제공 방식 ()									
	30-4. 제공 기간									
	30-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30-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공지	} (직	원이 필	담할	수 있음)					
	31. 시각장애인의 자료실 이용을 보조하기 위한 저 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확대경(돋토 기) 등을 제공하고 있음.] - -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 기 - '예'인 경우, ■ 저시력용 독서기 ■ 음성지원 컴퓨터 ■ 확대경(돋보기) □ 기타					
	31-1. '음성지원 컴퓨터'를 설치한 경우, 따로 ㅇ 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 20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저시력용 독서기', '확대경 (돋보기)'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32-2. '음성지원 컴퓨터'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0			* 20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저시력용 독서기', '확대경 (돋보기)'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홈페이 지 사용	33.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도 서관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					
지 및 정보제 공	34. 키보드만으로 도서대출 예약, 열람실 자리 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35.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의 기능을 지원함	0 8 2 1 21	축) p)	니 이 원	. 기취수의 /기키 드스 취비크					
기타	36. 그밖에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 여 기재 가능)	선안 시	-앙 빚 .	모똰알	' 사앙은! (사신 등을 점무하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과 오디북 설치되어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 공이 없는 점이 아쉬웠음
- 수화서비스는 현재 없으나 지역 장애인 센터와 연계한 서비스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추기로 약속함.
- 타도서관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자료가 많고 서비스도 좋음.
- 점자책 80권, 수화영상도서DVD 다수, 근활자도서 354권, 오디오북 253종, 장애인 책배달 서비스 실시 중
- 수화서비스는 현재 없으나 지역 장애인 센터와 연계한 서비스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추기로 약속함.
- 보이스바코드 삽입 책자 구비하고 있음.



▶보이스바코드 삽입 책자



▶도서관 점자도서대



▶큰활자도서대



▶독서확대기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60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나) B도서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음(2cm이하)		0		* 단차높이 37 cm
		1-1.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상이라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라면 "해당없음"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1-2.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작동 가능함				*작동 모습 사진 첨부
		1-3. 경사로가 있는 경우 기울기	높이 길이 기울	: _		<u>1</u> !॰]*100) : <u>17.5</u>
		1-4. 경사로가 있는 경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0			* 손잡이가 설치된 곳 ■ 양쪽 측면 □ 한쪽 측면 □ 기타
	건	1-5. 다른 출입구를 통해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당 출입구의 단차제거, 경사 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음				* 다른 출입구의 예: 민원실, 후문 등
	물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0.8m이상)	0			* 통과유효폭 <u>1.7</u> m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휠체 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1.2m이상)	0			*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 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 끝-입구(문)간의 거리
	및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접 근	4-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 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0			* 사진 첨부
	로	42. 화분이나 깔판 등으로 유도블록이 덮여 있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		0		
		5.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 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 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점자안내판 □ 촉지도식 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기타
		5-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 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5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표기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 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자동문 □ 여닫이문 □ 미닫이문 □ 기타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0			

1.5		1			
줄입자확인	8. 이용자 확인 구간(학생증을 스캔하여 출입 할 수 있는 허리높이까지 설치된 게이트) 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이 '	미설		* 주출입구 쪽의 이용자 확인 구간 체크
인 구 간	8-1. 휠체어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게이트 를 따로 마련하고 있음.	치된 서관(
복	9.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 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1.2m이상)	0			* 유효폭 3.6 m
도 및	9-1. 의자, 화분, 휴지통 등으로 통로 유효폭이 좁혀져 있음		0		* 유효폭 확보를 위해 복도 및 통로를 좁히는 의자, 화분 등을 치울 것을 요청
통 로 등	10. 기관이 2층 이상에 있거나, 또는 2층 이상 인 경우, 이동에 필요한 엘리베이터가 설 치되어 있음				* 기관이 1층으로 된 경우 '해당없음' ■ 엘리베이터 □ 휠체어리프트 □ 기타
	10-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 작동 가능함	0			*작동 모습 사진 첨부
	11.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angle	
	11-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0	\angle	
	12.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 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12-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 손되어 있음		0		* 사진 첨부
	13.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화-	14.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 0.7 m
장 실	15.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 로 표기 * "아니오"인 경우.
	16.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17.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 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8.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19.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20.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2,3 층	21. 이용자 확인 구간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0			* 2, 3층 자료실 안으로 들어 가는 쪽의 출입자 확인구간
자 료 신	21-1.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이지만 장애물로 인하여 통과가 어려움		0		
실 입 구	21-2. 휠체어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게이 트를 따로 마런하고 있음.		0		
서비스 도 이용에 서 있어서 대 의 출	22. 도서대출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 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 '아니오'인 경우, 도서대출대 높이 m

	대	23. 도서대출대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 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열 람 실	24. 열람실 책상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 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0			* '아니오'인 경우, 열람실 책상높이 m					
	책 상	25. 열람실 책상의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26. 자료검색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 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 '아니오'인 경우, 자료 검색대 높이 m					
	자 료 검	27. 자료검색대의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색대	28.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검색 도구의 음성지원기능 등이 제공되거나 키 보드만으로 자료검색이 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음성지원 기능 □ 기타 □ 키보드로 검색가능					
		* 아래 질문은 기관의 담당	자에	게 격	시접 경						
정당한 편의제		시각장애인이 자료실 이용을 위하여 리플렛 등을 요구할 경우,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 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공 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기타					
공	29-1. 요구 방식 (직원에게 직접 요구)										
		2. 제공 방식 (기관에서 직접 수령)									
		3. 제공 기간 당일									
	29-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29-5. 대체수단으로써 '활동보조인력' 제공여부 및 제공자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 공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 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화상전화 □ 기타					
		1. 화상전화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 작동함			* 1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2. 요구 방식 ()									
		3. 제공 방식 ()									
		4. 제공 기간									
		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 7 1 ·	ام (ه	w] -1.÷	R 스 이 O \					
	30-	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공자	(পু	천의	世甘?	· · · · · · · · · · · · · · · · · · ·					
		시각장애인의 자료실 이용을 보조하기 위한 저 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확대경(돋보 기) 등을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저시력용 독서기 ■ 음성지원 컴퓨터 ■ 확대경(돋보기) □ 기타					
						1					

	31-1. '음성지원 컴퓨터'를 설치한 경우, 따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0			* 20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저시력용 독서기', '확대경(돋 보기)'을 체크한 경우, '해당 없음' 표기
	32-2. '음성지원 컴퓨터'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 제 작동하고 있음.	0			* 20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저시력용 독서기', '확대경(돋 보기)'을 체크한 경우, '해당 없음' 표기
홈페이 지	33.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도 서관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기노 기체로 기이리기 ALO
정보제	34. 키보드만으로 도서대출 예약, 열람실 자리 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음	0			*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공	35.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의 기능을 지원함	0			
기타	36. 그밖에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 하여 기재 가능)	한 시	·항 !	및 보	완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

- 주출입구 경사로의 폭(1.0M)이 좁고 곡선형태로 되어있어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예상됨.
- 주차장 바닥 페인트가 흰색이며 색이 바래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음.
-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되어 있음, 출입구의 넓이가 협소(0.7M)하여 휠체어로 통행하기 불가능해 보임.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는 미설치, 수화서비스는 현재 없으나 지역 장애인 센터와 연계한 서비스 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갖추기로 약속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서비스가 제공되고 , 큰 활자 도서 구비되어 있음
- 도서무료 택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종이에 필요한 책을 주 문하면 한달에 한번에 30권씩 배송해주고 있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다) C도서관

항목		점검사항	예	야모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음(2cm이하)		0		* 높이차가 있을 경우 단 차높이 100 cm
		1-1.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상이라도 휠체어 가 오를 수 있는 정도 의 높이라면 "해당없음"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1-2.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작동 가능함	노	이 :	100	*작동 모습 사진 첨부
		1-3. 경사로가 있는 경우 기울기	길	이 :	840	<u>cm</u> ○]*100) :11.9
		1-4. 경사로가 있는 경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С			* 손잡이가 설치된 곳 ■ 양쪽 측면 □ 한쪽 측면 □ 기타
		1-5. 다른 출입구를 통해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당 출입구의 단차제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음				* 다른 출입구의 예: 민원실, 후문 등
	건 물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0.8m이상)	С			* 통과유효폭 <u>1.7</u> m
시 설	주출입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휠 체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1.2m이상)	С			* 유효거리란, 출입구탁- 건물입구(문) 또는 경 사로상단끝-입구(문)간 의 거리3.6 m
시 설 접 근 성	구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С			
성	및	4-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 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0			* 사진 첨부
	접근	4-2. 화분이나 깔판 등으로 유도블록이 덮여 있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		0		
	로	5.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 기
		5-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 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5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 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 기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0			

 출입 자 확	8. 이용자 확인 구간(학생증을 스캔하여 출입할 수 있는 허리높이까지 설치된 게이트)의 통 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확 (이	입 자 인구간 . 미설		* 주출입구 쪽의 이용자 확 인구간 체크
인 구 간	8-1. 휠체어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게이트 를 따로 마련하고 있음.		년 도 난임.		
	9.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 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1.2m이상)	0			* 유효폭 3.0 m
복 도	9-1. 의자, 화분, 휴지통 등으로 통로 유효폭 이 좁혀져 있음		0		* 유효폭 확보를 위해 복 도 및 통로를 좁히는 의 자, 화분 등을 치울 것을
및					요청 * 기관이 1층으로 된 경
통 모	10. 기관이 2층 이상에 있거나, 또는 2층 이 상인 경우, 이동에 필요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음	0			위한 18 프로 된 경우 '해당없음' ■ 엘리베이터 □ 휠체어리프트 □ 기타
	10-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 작동 가능함	0			*작동 모습 사진 첨부
	11.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О		\angle	
	11-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0		
	12.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О			
	12-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 손되어 있음		0		* 사진 첨부
	13.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 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 는 경우 "예"로 표기
<u></u> <u>5</u>].	14.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0	-		* "아니오"인 경우 너비 m
화 장 실	15.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 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 "아니오"인 경우. - 너비 m - 깊이 m
	16.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17.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8.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О	,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9.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20.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2,3 충 자	21. 이용자 확인 구간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 상임	0			* 2, 3층 자료실 안으로 들 어가는 쪽의 출입자 확인구 간
료 실	21-1.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이지만 장애물 로 인하여 통과가 어려움		0		
입구	21-2. 휠체어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게이트 를 따로 마런하고 있음.		0		

						4
	도서 대출 대	22. 도서대출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 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 '아니오'인 경우, 도서대출대 높이 m
		23. 도서대출대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 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 깊이 m
	열 람	24. 열람실 책상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 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 '아니오'인 경우, 열람실 책상높이 m
	실 책 상	25. 열람실 책상의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 되어 있음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 깊이 m
		26. 자료검색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 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 '아니오'인 경우, 자료 검색대 높이 m
서비	자 료 검	27. 자료검색대의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어 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 음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 깊이 m
스 용 이 에 있어의 있어 정당	색 대	28.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검색 도구의 음성지원기능 등이 제공되거나 키 보드만으로 자료검색이 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 기 - '예'인 경우, □ 음성지원 기능 □ 기타 □ 키보드로 검색가능
한		* 아래 질문은 기관의 담당	사에	게 직접	/] 질의) *
편의 제공] 가장애인이 자료실 이용을 위하여 리플렛 등을 요구할 경우,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0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 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기타
		1. 요구 방식 ()				
	29-2	2. 제공 방식 () 3. 제공 기간				
	29-4	5. 세ㅎ 기산 4. 제공하지 않는 이유 (필요성을 못느껴서)				
	29-5	5. 대체수단으로써 '활동보조인력' 제공여부 및 기	네공/	작 : 담	당 직	원
	30. 총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화상전화 □ 기타	
		1. 화상전화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 작동함	7) 2		11 71	* 1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요구 / 3. 제공 방식 () 	전호	·상으로	사전	요구 능)
		9. 세ㅎ 형식 () 4. 제공 기간				
		*. 세ㅎ 기선 5. 제공하지 않는 이유 ()				
		5. 세 5 이시 당는 기기 (<i>)</i> 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공자 (직원	일이 필	담할	 수 있음)
	,			_ , =		

	31. 시각장애인의 자료실 이용을 보조하기 위한 저시 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확대경(돋보기)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저시력용 독서기 □ 음성지원 컴퓨터 ■ 확대경(돋보기) □ 기타
	31-1. '음성지원 컴퓨터'를 설치한 경우, 따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0		* 20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저시력용 독서기', '확대경 (돋보기)'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32-2. '음성지원 컴퓨터'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 제 작동하고 있음.		0		* 20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저시력용 독서기', '확대경 (돋보기)'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홈페 이지	33.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도서 관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사용 및	34. 키보드만으로 도서대출 예약, 열람실 자리 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음	0			*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 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정보 제공	35.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의 기능을 지원함	0			
기타	36. 그밖에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여 기재 가능)	사	항 및 도	브완힐	·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하

- 장애인에 대한 책배달 서비스인 "책나래" 프로그램 운용
- 장애인화장실은 규격에 맞게 잘 돼있지만 남녀 구분없음
- 화상전화기는 미설치
- 1층 안내실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음
- 수화서비스는 현재 없으나 지역 장애인 센터와 연계한 서비스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추기로 약속함.



▶책배달서비스 "책나래"



▶휠체어 비치

라) D도서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음(2cm이하)	0			* 높이차가 있을 경우 단차 높이cm								
		1-1.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 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 음				*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상이라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라면 "해당없음"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1-2.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작동 가능 함				*작동 모습 사진 첨부								
		1-3. 경사로가 있는 경우 기울기	길이]:]: 알기(높여	 기/길이	*100) :								
		1-4. 경사로가 있는 경우 손잡이가 설치되 어 있음	0			* 손잡이가 설치된 곳 ■ 양쪽 측면 □ 한쪽 측면 □ 기타								
	건물 주	1-5. 다른 출입구를 통해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당 출입구의 단차제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 가 되어 있음		0		* 다른 출입구의 예: 민원실, 후문 등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 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0.8m 이상)	0			* 통과유효폭 <u>1.8</u> m								
	및 접근로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휠 체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 음(1.2m이상)	0			*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끝-입구(문)간의 거리 3.1m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4-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되지 않고 온 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0			* 사진 첨부								
		4-2. 화분이나 깔판 등으로 유도블록이 덮 여 있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		0										
										5.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 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 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 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 기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5-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편의 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5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 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 기 □ 자동문 □ 여닫이문 □ 미닫이문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0		
출입자확	8. 이용자 확인 구간(학생증을 스캔하여 출 입할 수 있는 허리높이까지 설치된 게이 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확 (이	입 자 인구간 , 미설	* 주출입구 쪽의 이용자 확 인구간 체크
인 구 간	8-1. 휠체어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게이 트를 따로 마련하고 있음.	치된 서관		
	9.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 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1.2m이상)	0		* 유효폭 3.6 m
복 도 및	9-1. 의자, 화분, 휴지통 등으로 통로 유효폭 이 좁혀져 있음		0	* 유효폭 확보를 위해 복도 및 통로를 좁히는 의자, 화분 등을 치울 것을 요청
天 통 牙 片	10. 기관이 2층 이상에 있거나, 또는 2층 이 상인 경우, 이동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음	0		* 기관이 1층으로 된 경우 '해당없음' □ 엘리베이터 ○ □ 휠체어리프트 □ 기타
	10-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 작동 가능함	0		*작동 모습 사진 첨부
	11.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0		
	11-1. 화장실이 남녀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0		
	12.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12-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되어 있음		0	* 사진 첨부
	13.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0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 우 "예"로 표기
화 장 실	14.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너비 m
	15.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 상, 깊이 1.8m 이상"임	0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아니오"인 경우. - 너비 m - 깊이 m
	16.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임	0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17.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0		

			1			. 77777 011. 70 (17)
		18.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0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 당없음"
		19.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여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20.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0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층	21. 이용자 확인 구간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0			* 2, 3층 자료실 안으로 들어 가는 쪽의 출입자 확인구간
	자 료 실	21-1.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이지만 장애 물로 인하여 통과가 어려움		0		
	입구	21-2. 휠체어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거 이트를 따로 마련하고 있음.		0		
	도 서	22. 도서대출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 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싱 0.9m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 '아니오'인 경우, 도서대출대 높이 m
	대 출 대	23. 도서대출대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어 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 치되어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열 람 실	24. 열람실 책상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 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싱 0.9m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 '아니오'인 경우, 열람실 책상높이 m
	르 책 상	25. 열람실 책상의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홑 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 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음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서비스 이용에		26. 자료검색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 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싱 0.9m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 '아니오'인 경우, 자료 검색대 높이 m
있어서 의 정당한 편의제	자료검	27. 자료검색대의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치 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 치되어 있음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굥	색 대	28.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검 색도구의 음성지원기능 등이 제공되거 나 키보드만으로 자료검색이 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음성지원 기능 □ 기타 □ 키보드로 검색가능
		* 아래 질문은 기관의 당	당기	나에게	직접 질	<u>l</u> 의 *
		시각장애인이 자료실 이용을 위하여 리플릿 등을 요구할 경우,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 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 상기 예시를 하나라도 제 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기타
	29-	-1. 요구 방식 (예시: 직원에게 직접 요구/ 전	화상	으로 시	·전 요?	청 등)
	29-	2. 제공 방식 (예시: 기관에서 직접 수령/ 집	으로	송부 -	등)	

	29-3. 제공 기간 당일							
	29-4. 제공하지 않는 이유 (예시: 비용이 많이 들	어	l, 필요	성을 못	는느껴서)			
	29-5. 대체수단으로써 '활동보조인력' 제공여부 및 제공자							
	30.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 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화상전화 □ 기타			
	30-1. 화상전화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 작동함				* 1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30-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직원에게 직접 요구	- 0	/ 전호	사으로	. 사전 요구 등)			
	30-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요?	청 /	화상전	화기 -	구비 등)			
	30-4. 제공 기간 당일							
	30-5. 제공하지 않는 이유 (필요성을 못느껴서 등	€)						
	30-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공	작 (직원이	필담힐	수 있음)			
	31. 시각장애인의 자료실 이용을 보조하기 위한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확대경 (돋보기) 등을 제공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저시력용 독서기 □ 음성지원 컴퓨터 □ 확대경(돋보기) □ 기타			
	31-1. '음성지원 컴퓨터'를 설치한 경우, 따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0		* 20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저시력용 독서기', '확대경 (돋보기)'을 체크한 경우, '해 당없음' 표기			
	32-2. '음성지원 컴퓨터'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0		* 20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저시력용 독서기', '확대경 (돋보기)'을 체크한 경우, '해 당없음' 표기			
홈페이 지	33.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도서관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0			* 기노 기체를 키이크키 AL			
정보제	34. 키보드만으로 도서대출 예약, 열람실 자리 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음	0			*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 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공	35.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의 기능을 지원함	0						
기타	36. 그밖에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불 하여 기재 가능)	편한	<u></u> 사항	및 보	안 할 사항은? (사진 등을 첨부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수화서비스는 현재 없으나 지역 장애인 센터 와 연계한 서비스 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갖추기로 약속함.
- 시각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책, 확대경, 돋보기 등이 없음
- 도서자동반납기와 무인대출기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높음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72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 2) E도서관(2010년 모니터링 대상기관)
 - O 대상시설 선정 이유
 -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보유도서도 많고 대구 중심에 위치해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음
 - O 2010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2010년 모니터링 내용	2013년 모니터링 내용
주 <u>출</u> 입 구 부근	 출입구 내부에 촉지도식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먼지가 쌓여있어 사용 하기 불쾌함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판 없음 출입구에 점자블럭이 발판으로 덮여있었음 	 출입구 내부에 촉지도식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음 음성안내 및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출입구에 점자블럭이 발판으로 덮여있었음
시설내 이동권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점자유도블럭, 음성안내장치, 점자안내지도 등 없음 열람실, 자료실, 검색실 등의 출입문이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여닫기에 불편함 계단 손잡이 층수 및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 없음 승강기의 내부 공간이 협소하며 음성지원 안됨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점자유도블럭, 음성안내장치는 있으나 점자안내지도 등 없음 열람실, 자료실, 검색실 등의 출입문이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 하는 장애인이 여닫기에 불편함.(장애인 열람실은 반자동문이었음) 계단 손잡이 층수 및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 없음(주요시설에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럭 없음) 승강기의 내부 공간이 협소하며 음성지원 안됨
장애인 화장실	 남녀분리 되어 있지 않음 잠금장치 이용 불편함 내부 공간이 충분히 넓지 않음 화장실 사용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 없음 회장실 앞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및 점형 블럭 없음 	 남녀분리 되어 있음 출입문이 여닫이문이었음 잠금장치 작동이 잘 되고 있음 내부 공간이 충분히 넓지 않음. 화장실 사용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 있음 화장실 앞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및 점형 블릭 있음
열람실	• 장애인열람석이 있으나 평소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표지를 치우거나 비장애 인이 이용함	• 장애인열람석이 있고, 지금은 장애인만 이용하고 있었음
정당한	• 독서확대기, 도서 검색 컴퓨터(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도서 검색 컴퓨터(시각장애

편의제 공

- 인 사용가능) 등의 **기기가 고장 나 있음** 도서관 직원이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었음.
- 점자안내책자 없음.

- 인 사용가능) 등의 **정상적으로 사용 가 능함**
- 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사용하는 사람이 도서관 직원이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법 없다고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었음. • 모르고 있음
 - 점자안내책자 없음.

기타시 설

- 자판기, 음수대 등 점자표지판 미부착/자료검색대, 안내데스크 등이 높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모니터링 이후 개선되지 않았음
- 화장실, 장애인열람실등의 표기로 '장애인, 장애우'를 같이 사용하고 있음.
- 지하 하 식당까지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고장 중이었음(사용자가 없어서 고장이 났다고함)



▶장애인열람실



▶도서확대기

- 3) F도서관(2010년 모니터링 대상기관)
 - O 대상시설 선정 이유
 -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으며 다양한 문화강좌로 점차 이용객들 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잘 돼있는지 확인하고자 모니터 링 하기로 함
 - O 2013년 모니터링 결과
 - 도서관의 주출입구는 턱이 없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음. 그 외 출입구는 계단이 있으나 경사로가 없어 출입이 어려움
 - 도서관의 전면 유효거리 및 통과유효폭은 여유가 많아 통행에 어려움이 없으며, 주 출입구 바닥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지만 규정에 맞지 않는 색을 사용하

고 있음

- 시각장애인을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도서관 주 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도서관의 주차구역은 27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면임.
- 도서관의 출입자 확인구간은 별도로 없으며, 2,3층의 자료실 입구는 휠체어장애 인이 통과하는데 어려움 없음
- 장애인 화장실은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화장실 내부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에 불편함이 없으며 조명밝기는 비장애인 화장실과 동일한 밝기로 사용에 무리가 없었음.
- 인터폰이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해 줄것을 요청하였음.
- 도서대출대의 하부공간이 높이0.75m, 깊이 0.16m로 기준값인 "높이0.65m이상, 깊이 0.45m"에 미흡하지만 도서대출에는 무리가 없음.
- 시각장애인이 자료실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로 점자자료와 확대문서는 편의제공 이 가능하나 보이스바코드는 제공되지 않았음.
- 청각장애인이 자료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수화통역과 화상전화는 제공이 불가능함.



▶주출입구 회색점자블럭



▶음성지원컴퓨터와 독서확대기

나. 공원 모니터링 결과 및 주요내용

- 1) A공원(2010년 모니터링기관)
 - O 대상시설 선정 이유
 - 지역주민 및 어느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선정하였고, 지난모니터링 이후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함.
 - O 2010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2012년 이전 모니터링 내용	2013년 모니터링 내용
주출 입구 부근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 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이 없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 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이 없음. 주출입구 점자블럭이 대리석이라매우 미끄러웠고 색상도 규정에 맞지 않았음
장애 인화 장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되어 있음. 거울과 보조 손잡이가 구비되어 있으 며, 공간은 넓음. 하지만 화장실 내부 바닥이 미끄러워 주의가 필요함.	• 변경된 사항 없음
공원 내 이동 및 교통 시설	 공원 내 이동시 경사가 높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음 주변의 교통시설은 버스 노선 많고 저상버스 운행함.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공원까지 이동시 인도의 폭이 좁아 다소 위험함. 	체어 장애인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음 • 시내방면에서 공원쪽으로 이동해보았
주차 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따로 있었고 출구와 가까워 이동에 용이함. 하지만 기존의 주차 공간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그림만 넣은 듯 공간이 다소 좁았음.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이 구비되어 있고, 지상의 야외 공원으로 올라가는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해 있음. 	변경사항 없음 공원 유료주차장을 90%이상 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함. 출입구는 급경사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없이 이동하는 것이 불가함.
편의 시설	 공원 내 무인안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시각 장 애인이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높이가 높고 약10cm가량의 턱이 있어 불편해 보였음. 	• 변경사항 없음

2) B공원

O 2010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2012년 이전 모니터링 내용	2013년 모니터링 내용
주출 입구 부근	• 주출입구는 넓으나, 안내판에 별도의 음성안내장치, 점자표식 등은 구비되 어 있지 않음	• 공원 주출입구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 어 출입은 문제가 없으나 시각장애인 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장애 인화 장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 되어 지하주차장과 야외 공원 모두 에 설치되어 있음 모든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는 버튼 식 자동문이 설치됨. 	 장애인 화장실 내외에서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화장실의 개폐를 조절할 수 있었음 버튼식 여닫이 문이 있으나 반투명문 으로 옷 색깔따라 사용자가 밖에서 보임. 사생활 침해가 됨.
공원 내 이동 및 교통 시설	• 공원 내 산책로의 이동의 어려움은 적으나 체육시설과 같은 공원 내 시 설의 접근시 턱이 높거나 입구의 폭 이 좁은 경우가 있음	• 변경사항 없음
주차 시설	•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이 구비되어 있고, 지상의 야외 공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해 있음.	• 변경사항 없음
편의 시설	 음수대, 매점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 인들의 접근성 부족 자판기 지폐투입구와 버튼의 위치가 높아 이용에 어려움. 공원 내 매점 입구에 턱이 높아 접 근이 어려움. 	• 변경사항 없음

3) C공원

○ 대상시설 선정 이유

-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영순숲 공원을 모니터링 하고자 선정하게 되었음.

○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 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과 형태가 고려되어 설 치되어 있습니다.	0		
공원 내 이동	2	공원 안의 보도 중 하나는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 도록 너비, 기울기, 바닥의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 습니다.	0		
	3	공원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가설치되어 있습니다.		0	
	4	장애인용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문이 충분히 넓습니다.	0		
화장 실	5	장애인용 화장실 내부는 전동휠체어가 회전하기에 충분하도 록 넓습니다.		0	
	6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О		
편의	7	매표소, 판매기 및 음료대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접근이 가능한 위 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0
시설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너비와 깊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충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9	공원과 주변 교통시설(지하철역사, 저상버스정류장)과 연 결되는 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О
교통 시설	10	공원과 주변 교통시설(지하철역사, 저상버스정류장)에서 공원까지 휠체어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 다.			О
	11	공원 주변 지하철 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0
	12	공원 주변 버스 정류장에는 저상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0

○ 2013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내용
공원 내 이동	 공원 진입로부터 공원 내 이동 통로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의 이동에는 어려움이 없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오픈된 공원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 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화장 실	 남.여 구분되어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화장실 진입로 경사로가 1.4/12로 기준치 초과, 화장실 주출입문 단차가 5cm로 혼자서 화장실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내부 화장실 출입문은 80cm 로 문제가 없으나 내부 공간 너비가 120cm로 휠체어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나 전동휠체어 이용은 어려움이 있음. L자 손잡이와 회전식 손잡이는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손잡이 간격이 84cm로 넓음.
편의 시설	 공원 주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용이 함. 하지만, 표시가 미약하고 지금 공사중으로 장애인 주차 공간이 강변 뚝 공사로 인해 줄어들었음 차후 개선이 필요함.
교통 시설	 공원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없으며, 저상버스도 없음. 자가용차량 이용이나 이륜차를 이용하여 공원을 이용해야 함.



▶화장실 경사로



▶주출입구 앞 배수구-휠체어바퀴나 흰지팡이가 빠질 수 있음

다. 문화예술·체육시설 모니터링 결과 및 주요내용

- 1) A문화예술회관(2011년 모니터링 기관)
 - O 대상시설 선정 이유
 - 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체험 및 이용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11년 모니터링 받은 사례가 있어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싶어 선정하게 되었음
 - 2011년 모니터링후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3가지를 개선하였다고 함
 - O 모니터링 후 개선사항
 - 주 출입구 입구 경사로 손잡이 설치
 - 주 출입구 입구 및 공연장 입구 광장측 점형블럭 설치
 - 공연장 입구 화장실 개조-비장애인화장실 2칸 중 1곳을 장애인화장실로 사용중



▶보완공사 #1-경사로 손잡이 설치



▶보완공사 #2-공연동과 문화동 입구측 광 장점형블럭 설치



▶보완공사 #3-장애인 화장실 개조공사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80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 예술회관의 주출입구는 계단 턱이 있으나 경사로가 넓게 설치되어 있음
- 예술회관의 전면 유효거리 및 통과유효폭은 여유가 많아 통행에 어려움 이 없으며, 주 출입구 바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없음
- 공연장의 맨 앞자리에 휄체어 사용자를 위한 이동식 좌석이 배치돼있음
- 예술회관 매표소 하부공간은 높이0.8m, 깊이 0.2m로 기준값인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에 깊이 기준이 비흡하나 통상 매표 발매는 밖에서 담당자가 직접하기 때문에 이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함
- 인터폰이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 주문을 부탁하고 왔음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은 되고 있지 않음.

2) B문화시설(2011,12 모니터링 대상기관)

- O 대상시설 선정 이유
 - ○○에서 가장 큰 공연장 중 하나이고 공연횟수도 많음. 공연 등 문화활동을 즐기는 장애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이용을 위해 모니터링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음
- O 2012년 이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2012년 이전 모니터링 내용	2013년 모니터링 내용
주출 입구	• 주출입구는 자동문이 아니고 여닫이 문이라 불편하지만 유효폭은 넓어 휠 체어 통행가능함	주출입구 변동사항 없음 주출입구 부근(공연장 내부) 점자블 럭이 철재로 되어있어 눈부심이 있을 수 있음.
장애 인 화장 실	 장애인전용화장실은 넓고 사용가능하지만 남녀구분이 되어있지 않음. 화장실 내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너비는 부족함 	아니지만 남녀구분되어 설치돼있음
매표 소	• 매표소 높이는 적당하지만 하단부분 깊이(0.15m)가 적당하지 않음	• 변동사항 없음
주차 장	• 공연장까지 가려면 지하주차장에서 엘 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계단을 5개 정 도 올라가야 하는데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함(경사로 설치가 필요함)	• 변동사항 없음

	2012년 이전 모니터링 내용	2013년 모니터링 내용
정당 한편 의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 서, 보이스바코드 등은 제공이 되지 않음(공연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프 로그램을 만들기 어려움)	• 변동사항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지정석은 3층까지 맨 뒷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어 이동 가능 함. 비상구표시, 화재경보기, 시각경보기등은 잘 설치되어 있고 음료수 자판기의 경우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높고 정수기도 마찬가지임. 실제로 관람이나 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 변동사항 없음



▶엘리베이터-공연장 이동 휠체어 리프트



▶공연장 내부 철재점자블럭

- 3) C문화회관(2011년 모니터링 대상기관)
- O 대상시설 선정 이유
 - ○○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의 시설접근성이 좋음
- O 2011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2011년 모니터링 내용	2013년 모니터링 내용
주출입구	 건물 주출입구 앞에 점형블록이 있지만 내에서 복도와 화장실 가는 유도블록 없음. 주출입구 부근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복도 손잡이에 점자안내표지 있음 	• 변동사항 없음
복도 및 통로	• 1층에 있는 연극 관람실(1)으로 가는 주출입구(문)의 통과 유효 폭이 넓지 않음.	• 변동사항 없음
공연장 내부	• 연극 관람실(2)내에서 장애인좌석(5 석) 배치되어 있음.	• 변동사항 없음
장애인 화장실	 화장실 앞에 점형블록 있고, 남·녀화장실 구분되어 설치 장애인전용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이 부족함. 대변기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음. 	변동사항 없음 장애인화장실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잠금장치 설치돼있음
정당한 편의 제공	 안내실에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음 문화, 예술활동 정보 관련 리플렛이 많이 있지만 점자안내책자, 보이스 아이 등 제공되지 않음. 	• 변동사항 없음(장애인을 위한 보 조인력 배치)

- 4) D체육관(2011년 모니터링 대상기관)
- O 대상시설 선정 이유
 - ○○에 있는 체육시설 중 장애인 체육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 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예전에는 경기 관람석까지 휠체어는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개선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함.
- O 2011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2011년 모니터링 내용	2013년 모니터링 내용
	• 장애인 주차장 잘 갖추어져 있음	• 장애인 주차장 잘 갖추어져 있음. (장애인 주차구역은 4면)
	• 주출입구 경사로 휠체어 이동에 어려	• 주출입구 경사로 변동없음
시설 접근성	움 없음 • 시민체육관에서는 휠체어 농구 등 장 애인 운동경기가 실제로 열리고 있지	• 2012년에 공사를 통해 샤워실, 탈의실은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었음
	 만, 샤워실, 탈의실 등은 휠체어가다닐 수 없었음. 휠체어는 2층 관람석으로 올라갈 수 없어, 경기가 진행되는 라인 밖에서관람해야 함. 	• 2012년에 체육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수직 리프트를 설치하여 2층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되었음
정당한 편의 제공	•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없음	•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 한 편의제공 없음



▶2층 관람석 수직 리프트 설치

5) E문화센터

- O 대상시설 선정이유
- E문화센터는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적은 ○○지역에 위치해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아 지고 있어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O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Ο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 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고정경사로 □ 임시경사로
	건물주출입구	2.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1.2m 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유효거리 m - 전면 유효거리란, 출입구턱- 건물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 끝-입구(문) 간의 거리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장 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시설 접근성		3.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0			* '아니오'인 경우, 통과유효폭 * 문이 잠겨져 있더라도, 요구 시 열어주었을 때 0.8.m 이상 이면 '예' 표기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장 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및 접근로	4. 주출입문이 회전문이나 무거운 재 질의 문으로 되어 있어 통과하기 어 려움	Ο			* '예'인 경우, □ 회전문 ■ 무거운 재질의 문 (사진첨부요망) □ 기타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장 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5. 주출입구 바닥면에 점형블럭이 설 치되어 있음		0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장 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6.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 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 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 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점자안내판 □ 촉지도식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기타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장 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6-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0		* 6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 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O			
		8.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 체어 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m 이상임	О			* '아니오'인 경우, 유효폭 m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장 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복	8-1.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1.2m 이상이지만, 화분이나 의자 등 기타 장애물로 인하여 통과가 어려움		О		
	「도 및 통	9. 시설이 2층 이상에 있거나, 또는				* 시설이 1층만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야외공연장인 경우 "해당없음"표기 * 시설이 1층 이상인 경우, 층 개수 층
	로 ド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이동에 필 요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음	O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 되어 있으면 "예"로 표시 - '예'인 경우, □ 경사로 ■ 엘리베이터
		10. 건물(공연장 및 박물관, 미술관) 내부 각 층을 휠체어 사용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음	0			* 내부 층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표기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장 인 경우"해당없음"표기
		11. 매표소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0	* '아니오'인 경우, 매표소 높이 m * 매표소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매 표 소	12. 매표소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 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 상"으로 설치되어 있음			0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 깊이 m * 매표소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표기
		13.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 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0		
시설 접근성	화장실	14.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 가 설치되어 있음	О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손 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실	15.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 (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 이상임	О			
		16.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 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 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О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 아래 질문은 공연장 또는 학교소속 박물관	· 미술:	 관 안내/		, ,			
	17. 시각장애인이 팜플렛 등을 점자자료, 확 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 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О		※ 시설담당자에게 질의! (행사팜플렛을 행사주최측에서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 시설 담당자가 임의로 행사주최측을 선정하여 질의한 후 체크함) * "예"인 경우, 제공주최 □ 광연장/박물관/미술관측 □ 행사주최측 □ 기타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기타 * 팜플렛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17-1. 요구 방식 (예시: 전화 등으로 요구,	관련서	식 작성	후 요-	구 등)			
	17-2. 제공 방식 (예시: 현장에서 직접 수령 / 집으로 발송 등)							
	17-3. 제공 기간 일							
문화· 예술	17-4. 제공하지 않는 이유 (예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요성을 못느껴서)							
에돌 활동에 있어서 의 정당한 편의 제공	18.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현장에서 요구할 경우, 제공 가 능함		0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 하면 "예"로 표기 □ 점자안내책자 □ 휠체어 □ 보청기 □ 기타			
	18-1. 휠체어, 보청기가 실제 작동하고 있 음				* 18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책자'를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18-2. 요구 방식 (예시: 공연 시작 전 안내데스크에 요구 등)							
	18-3. 제공 방식 (예시: 장비 대여 등)							
	18-4. 제공하지 않는 이유 (필요성을 못느껴서)							
	19.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 어 있음			0	*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해당없음" 표기			
	19-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지정석의 위 치가 맨 앞 또는 맨 뒤 등으로 특정되어 있 고, 다른 좌석에는 앉을 수 없음				* '예'인 경우, □맨 앞자리만 □맨 뒷자리만 □맨 앞자리 및 뒷자리만 □ 기타 (사진첨부 요망)			
	20.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 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О					
	20-1. 보조인력의 종류 ()							
	20-2. 제공하지 않는 이유 (필요성을 못느끼	격서)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이지	21.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 으로 공연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O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또는 홈페이지에서 공연예약서
사용 및 정보제 공	22.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 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예약이 가능함			О	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표기
기타	23. 그밖에 전반적으로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데 불 _편	현한 사형	당 및 보	· 보완할 사항은?

◆ 2013년 모니터링 주요내용

- 주출입구 에 경사로가 있으며, 양쪽에 손잡이 있음.
- 주출입구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표시등(야간에 불이켜짐)이 2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 주차 표지판 있음
- 건물 주출입구 문 앞쪽에 점자안내판 있음.
- 장애인화장실 경우 남.여 구분 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남자 소변기 손잡이가 기준 높이보다 높게 설치돼있음
- 건물내 화재 경보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등 있음.
- 지역 관청 관할 소속으로 웹사이트는 별도로 없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를 얻을 수 있다고 함.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없음

라. 금융기관(은행지점) 모니터링 결과 및 주요내용

- 1) ○○은행 ○○○○지점(2011년 모니터링 기관)
 - O 2011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2011년 모니터링 내용	2013년 모니터링 내용
 은행접수대 높이가 다른은행에 비해 낮아 휠체어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 ATM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으며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형화면, 음성패널도 설치 되어 있었음. 전동 휠체어는 주출입구에 경사로가 없어 뒷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뒷문은 안에서 만 열수 있음 은행 내부는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였음. 	• 변동사항 전혀 없었음(은행이 건물의 소유 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사로 등 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함)

- 2) △△은행 △△△△△지점(2011년 모니터링 기관)
 - O 2011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2011년 모니터링 내용

- 주출입구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는 접 근이 불가능 함
- ATM기 또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형 화면, 음성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주 변공간도 넓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가능함
- 은행내부에 고객 회장실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별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는 발급은 불가능함

2013년 모니터링 내용

- 주출입구 계단옆에 도움벨을 설치하였음.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게 간이 경사로를 상비하고 있음
- 그 외 변동사항 없음
- ATM기는 직원 퇴근 후에는 장애인이 이 용 할 수 없음
- 간이경사로와 도움벨을 설치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였음



▶주출입구 도움벨(2013년)



▶주출입구 간이경사로(2013년)

- 3) △△은행 □□지점(2011년 모니터링 기관)
 - O 대상시설 선정이유
 - △△은행 □□지점은 2013년 4월 이전하여 운영중이며 이전한 건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O 2013년 모니터링 결과(체크리스트 점검결과)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기타 (실측 결과 등)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 (2cm 이하)	0			
	1-1. 출입구의 높이차가 있는 경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0	턱없음
	2. 건물 접근로 유효폭은 1.2m 이상인지 여부	0			
	3. 건물 주출입구 부근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 록 설치 여부		0		실내.실외 점형블럭 없음
	4.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 문,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0			양여닫이문
금융시설 접근성	4-1. 출입문의 유효폭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통과하기 에 충분한지 여부 - 유효폭 80cm 이상	0			
省亡分	5. 시설 내 층 간 이동시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예, 엘리베이터)	0			엘리베이트 설치 5충건물 (1충-은행)
	6. 은행창구 접수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 근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 70cm 이상 90cm 이하	0			상담창구접수대 상부높이 79cm 하부높이 71cm
	7. 은행창구 접수대 하부 공간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0			하부공간깊이 20cm
	8. 시설 접근성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편의제공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다른 물적, 인적서비 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				= 전담인력은 없음. 직원 도움을 받아야
	9. ATM기의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가로 1.4m, 세로 1.4m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0			
	9-1. ATM기의 하부 공간은 방해물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0		하부공간없음
자동화	10. ATM기의 30c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 다른 질감의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0		
기기 접근성	11. ATM기의 카드투입구, 통장투입구, 현금입출입구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에 설치되어 있 는지 여부	0			높이 85cm
	12. ATM기의 카드투입구, 통장투입구, 현금입출입구 등의 깊이는 전면에서부터 0.45m 이내에 설치되어 있 는지 여부	0			44 cm

	13. ATM기의 LCD패널은 휠체어사용자도 보기 편하 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0		
	14. ATM기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지원, 일반버튼(점자포함)방식 등의 정당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0			
	15.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한 대기 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순서를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0		번호표를 뽑을수는 있으나 본인이 뽑은 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불가
	16. 입·출금,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금융상품 가입 시 비전자정보들의 확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 는지 여부				
	16-1.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 전화기, 보청기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0		
금융	16-2. 시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 경,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0		
서비스 접근성	16-3. 은행 창구 업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위 항목에서 열거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다른 물적, 인적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	청위	원경찰 ං 야함		직원의 도움을 받아
	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발급 여부		0		
			* 'olı] 0′0	1 -1 ((1)-1)-1 -1
	18. 인터넷 뱅킹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은행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예금 조회 및 이체와 관련된 업무		근 및 제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이용 사시오 원가입 그 인(금 근 이 처)	실 경우 웹페이지 접이 어려웠던 항목에 이 어려웠던 항목에 당인인증서 사용)(○ 회(○) 기동의 서비스 이용

◆ 주요내용

- 건물앞 주출입구 전면에 계단 및 턱없음.
- 은행 내 장애인화장실은 없고, 은행이 속해있는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음.
- 주출입문뿐만 아니라 건물 내.외부 점형 블록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출입문은 양쪽 여닫이 문으로 유효폭은 80cm이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통과하기에 충분함.
- 은행 창구 접수대 전체적으로 상부높이는 79cm, 하부높이 71cm, 하부공간이 20cm, 하부 공간 깊이가 부족하나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무리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은행 부출입구로 이동이 가능함.

- 부출입구 입구쪽 배수관 덮개의 틈새간격이 3cm로 넓어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앞바퀴부분이 틈새에 끼일 우려가 있음. (배수관 덮개 교체해 줄 것을 권했음)
- 시 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있지 못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보청기등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민원인을 돕는 청원 경찰이나 직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함.
- ATM기 중 한 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과 음성지원이 됨.
-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하부공간이 있는 기기는 없었으며, 화면이 누워 있어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대 설치되어 있고, 주차표지판 표준형으로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이 일반주차선과 동일한 흰색으로 색칠이 되어 확연한 구 분이 어려움.

마. 의료기관 모니터링 결과 및 주요내용

- 1) A대학교병원(2012년 모니터링 기관)
 - O 대상시설 선정 이유
 -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다시 모 니터링하여 시설의 접근성과 진료 및 상담 등 정당한 편의제공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O 2012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2012년 모니터링 내용	2013년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주 출입구 전면유효거리와 통과폭, 점형블럭, 복도 및 통행로 유효폭 등은 일정기준을 준수 하고 있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 지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는 없음 	• 변동사항 없음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의료관련 기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제공되지 않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은 제공됨. 	• 확대문서 제공 외 개선사항 없음
홈페이지 사용 및 정보제공	•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정보 확인이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정보 확인이 가능

2) B병원

- O 대상시설 선정 이유
 -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다시 모 니터링하여 시설의 접근성과 진료 및 상담 등 정당한 편의제공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12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2012년 모니터링 내용	2013년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전면유효거리와 통과폭, 점형블럭, 복도 및 통행로 유효폭 등은 일정기준을 준수 하고 있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 지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은 없 음. 접수대 하부공간이 휠체어가 들 어가기에 어려움 	 주출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은 개선사항 없음 청각장애인을 위한 건물내 비상등

정당한 편의제공	•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면 진료기록부나 의료관련자료를 점자자료와 확대 문서로 제공가능함 청각장애 인을 위한 영상전화기는 없으나 인근수화통역센터를 통해 수 화통역서비스 제공함	•	변동사항 없음
홈페이지 사용 및 정보제공	•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정보 확인이 가능함	•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정보 확인이 가능함

- 장애인편의시설은 휠체어 이용자, 지체장애인이 주가 되는 것이 많았음. 시·청 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대구파티마병원 비상등 설치)을 위해 노력하 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해 보여서 아쉬움이 많았던 모니터링이었음.

3) C병원(2012년 모니터링 기관)

- O 대상시설 선정이유
 - 지역에서는 큰 병원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고 생각되어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였음.
- O 2013년 모니터링 결과
 - 지난번 모니터링 이후 개선사항이 전혀 없었음
 - 주출입구 경사로가 금속재로 돼있어 비가올때 미끄럽고 위험하였는데 변화된 것이 없었고 주출입구 점자블럭의 훼손이 심한 곳이 있었음



▶주출입구 경사로-우천시 미끄러워 위험함

- 4) D병원(2012년 모니터링 기관)
 - O 대상시설 선정이유
 - □□지역에서 처음으로 모니터링 한 병원으로, 당시에 점형블록 설치,점자 안내 판설치와 의료기록관련 편의제공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해 왔음
 - O 2012년 / 2013년 모니터링 결과

	2012년 모니터링 내용	2013년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건물주출입구의 폭과 경사로 각도 모두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어 내부시설로 접 근이 용이하나, 손잡이가 미설치되어 있음 점자블록이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아 시 각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 병원측에서 점자블록의 설치를 약속함. 복도의 폭은 적정하고 내부에 턱이 있으나 물이 묻었을 때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있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음. 복도에는 턱이 없어 이동이 편리하나 통로에 핸드레일이 미설치되어 보행이 많이 힘든 장애인의 경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됨. 	 점자블록 설치외 개선사항없음.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소변기 옆에 양변 기를 배치해 놓아서 장애인들의 인권보 다는 구색맞추기라는 생각이 들었음
정당한 편의 제공	• 편의제공 없음	• 편의제공 없음

바. 주민센터 모니터링 결과 및 주요내용

- 1) A주민센터(2011년 모니터링 기관)
 - O 모니터링 결과
 - 들어가는 입구 경사로가 가파르고 연결 살수 송수구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가파른 경사길을 휠체어 돌리려다 부딪힐 위험이 있음.
 - 유도 블록은 잘 되어 있고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좁음. 통과 유효폭 0.91m로 법적인 유효 폭은 됨.
 - 건물 주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도 1.5m로 허용됨.
 - 장애인 화장실은 입구가 1.05m로 규격에는 맞으나 안에서 휠체어를 돌릴 수 없으며 양쪽 손잡이는 있고 폭이 1.1m로 화장지걸이의 높이가 놀다. 호출 버튼은 있음.
 - 민원접수대 전면에 휠체어를 단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은 확보됨. 접수대의 높이가 규격에 맞음. 0.82m
 - 접수대 하부 공간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음.
 - 높이 0.72m, 깊이 0.6m 규격 내에 들어감.
 - 민원자동발매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확대경만 확보되어 있음.
 -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보청기가 확보되어 있음.

2) B주민센터(2011년 모니터링 기관)

- O 모니터링 결과
 - 전체 주민센터가 지자체의 예산 문제로 인하여 새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한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함
 - 주출입구는 폭이 1.18m로 턱은 높이차가 없으며 회전도 멋지고 양쪽 손 잡이 있음.
 - B주민센터는 주출입구 공사 때 우리 모니터링 회원 □□□ 선생님이 직접 참여 했다고 함. 따라서 주 출입구는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음.
 -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는 규격 1.2이상인 1.4m를 확보하고 있음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 2층으로 올라가는 시설은 계단 밖에 없음.
- 민원접수대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 됨.
- 민원접수대 하부 공간에는 깊이가 0.31m로 좁아서 들어가기가 불편하고 높이는 0.72로 규격에 맞음.
- 민워자동발매기는 없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문서가 가능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보청기 와 수화툥역이 가능한 직원이 있음,
- 장애인화장실은 외부에 접이식 문으로 되어있음
- 이전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주민센터를 다시 점검하였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시설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직원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리 호의적인 것을 느낄 수 있었음.

가. A도서관

O 2013년 모니터링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계획)

구분	2013년 모니터링 지적 내용	개선사항(계획)
시설내이동권	 점자안내지도 없음 열람실, 자료실, 검색실 등의 출입문이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여닫기에 불편함 계단 손잡이 층수 및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 없음 승강기의 내부 공간이 협소하며음성지원 되지 않음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개선이 가능 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겠음
장애인화장실	・내부 공간이 충분히 넓지 않음	·구조변경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겠음
정당한 편의제공	•도서관 직원이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법을 모르고 있음 •점자안내책자 없음	•도서관 직원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법을 교육하였음 •2014년에 안내책자 제작 시 점자안 내책자도 함께 제작하겠음.
기타시설	 자판기, 음수대 등 점자표지판 미부착 자료검색대, 안내데스크 등이 높아 이용하기 어려움 화장실, 장애인열람실등의 표기로 '장애인, 장애우'를 같이 사용하고 있음 지하 1층 휠체어리프트 고장 	 빠른 시일안에 점자표지판 부착 하겠음 검색대, 안내데스크 높이 조절은 시설개선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겠음 '장애우'로 잘못 표기된 것을 '장애인'으로 수정하겠음 · 휠체어리프트 수리하였음

나. B도서관

O 2013년 모니터링 관련 개선계획

- 기간 : 2013~2016년

- 사업비 : 10,000천원 정도

- 개선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사업비 2014년추경 확보, 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선

O 개선 세부내용

모니터링결과	개선내용	시 기	비고
도서관 주출입구를 제외한 출입 구 경사로 미설치	 도서관1층 주출입구 및 지하출입구 통행에 어려움이 없음 장애인통행출입구를 주출입구 및 지하출입구로 안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할 예정임 		장애인 출입 불편 없도록 없도치 예정
점자블럭 색상 교체 요망	- 점자블럭 색상 교체 예정	2013. 12월중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요망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 장치중 편리한시설 설치하여 불편함 해소	2014. 10월중	2014년 추경확보
장애인화장실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	-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설치	2014. 10월중	2014년 추경확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보이 스바코드) 미제공	- 음성변환출력기(보이스바코드) 점차 확 보토록 함	2014~15년	2014년 추경확보
청각장애인 편의제공으로 수회통 역과 회상전화 미제공	- 수화서비스는 현재 없으나 지역장애인센 터와 연계 후 서비스 제공토록 함		

Ⅲ. 모니터링 활동 후기



2013년 모니터링 활동 평가 및 소감

○ 김세령(대구지역, 2010~2013)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이렇게 부족한 곳이 많은 것에 안타까웠고, 보훈병원처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하였을 때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에 알려 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며,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는 그 날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화이팅!!!

모니터링 조편성에 있어 직장이나 주소지가 같은 구에 있는 분과 조편성을 해서 조원들이 모이고 해어질 때 이동시간도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니터링 할 장소가 서로 가까이 있는 곳으로 묶어 모니터링 하여야 이동하는 시간을 단 축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O 김정자(대구지역, 2012~2013)

2013년 봄, 장차법 모니터링 사전 교육을 받고 팀 배정을 받았다.

정홍규, 원성필, 김운용, 김정자 등 네 명이 팀원이었고, 모니터링 장소는 의료기관, 공공기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체크한 곳을 한 번 더 둘러보면서 실행확인 차 들러보는 방법을 택했다.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요양병원은 비교적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상이다 보니 시설도 거기에 맞추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았다.

반면 치과병원은 비보험이나 젊은이들이 치료보다는 미용차원으로 이용하는 면이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관심 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기관은 나름대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신경 쓰는 편이었다. 특히 중구청의 경우 구청장 본인이 발을 다쳐보니 장애인들의 고충을 더욱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시설에 보충을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기는 하지만 아직도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점진적으로 모니터 일을 하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

한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들이 한 모니터링이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O 박만수(대구지역, 2013)

2013년도에 실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각 기관 즉 공공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시설, 은행 등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 첫째로 공공기관의 시설에는 그래도 의무 감인지는 몰라도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 하려고 노력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시정을 염두에 두고 수정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곳은 어떻게 하여야 확실하게 장애인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에 대해 미숙한 곳도 있었다.

둘째로 의료기관인데 생각하기로는 다른 어느 곳보다 장애인을 위하는 마음가짐과모든 시설이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시 제대로 되어 있어야함은 당연한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공공기관보다 생각하는 점부터 부족하고 시설도 빨리 차별금지법에 수반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보는 면에서는 그래도 노력은 했고 또 부족한 면은 다시 시정 한다고는 하나 사실 그대로 시정이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한다.

다음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운동 시설인데 이곳은 아직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은행을 이용할시 지금까지 모니터링 한 어느 곳보다 2~3년 전에 모니터링 결과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는 시설이 연약하고 이용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은 곳 이 많은 것 같다.

총체적인 결과로는 아직도 장애인을 위하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말로는 미비한곳을 시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족한 점이 해소 될 런지 의문이다,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문 제점을 시정하기위하여 권고하고 시정을 시키기 위하여 노력 하는 인권위원회가 없 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라도 되어 있었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의 다방면의 힘을 입어 그 정도라도 준비가 되어있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이야 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처음 모니터링을 시작 할 때는 미지의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체험 하려는 마음과 이 사회가 실지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현시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의구심까지 가졌었는데 생각보다는 준비가 많이 되었는데도 세심한 부분까지는 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것 같다. 그리고 시설 운영 기관에서도 하라고 하니 한다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찾아오는 장애인이 내 가족, 내 친척이 온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하나 규정0에 따라 개선하면 어느 장애인도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드나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 한다.

현재 모니터링 운영 팀은 계획을 잘 세워 짜임새 있게 조 편성과 모니터링 할 곳을 각자의 의견에 쫓아 편성과 체크를 하게 노력 한 것이 너무나 잘 짜임새 있게 준비해 주었고 운영 팀의 배려에 대해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감사히 생각 하고 열심히하였는데 결과는 만족스러웠는지가 걱정스럽다.

O 박현경(대구지역, 2012~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모니터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은 느꼈다. 정부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한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았다. 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나 활동보조인을 대동하여 일을 해결하는 것 같았다. 장애인 본인 스스로 나서서 이 일을 직접 행동을 해야 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편의시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필자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수화통역사를 대동하거나 통역사가 없을 경우 혼자서 필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모든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를 대동하여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그 불편함을 혼자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았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모든 시설에서 필수요건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를 만들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공서 같은 곳에는 편의시설이 구비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곳에서 미리 공문을 보내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으로만 그치는 것 같았다. 공공기관보다는 일상생할에 흔히 접하는 작은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좀 더 넓혀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O 송재동(대구지역, 2012~2013)

작년에 이어서 2년을 모니터요원을 했는데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경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장애 때문에 한계를 느낀 점도 있고, 모니터를 나간 기관에서 실망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4개월 동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즐거웠습니다. 2014년에는 장애인학교나 장애인 체험홈, 활동보조 중개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 어떨까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O 여경수(구미지역, 2013)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사회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턱 없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체장애자와 같이 특정 취약계층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해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저상버스가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2002년도에는 장애인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았다. 당시 장애인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2002헌마52)고 밝혔다. 또 2013년도에는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2012헌마840)고 밝히기도 했다.

2007년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접차별·간접차별·정당한 편의 제공거부·광고에 의한 차별 등 4대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행위를 고용·교육과 같은 6대 영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도에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의료기관·청소년활동시설과 같은 곳에서 장애인 접근성과정당한 편의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106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나도 이 모니터링 봉사단에 지원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구미에 소재한 10여 곳의 시설물의 장애인 편의 제공 현황을 모니터 링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혹은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31(휴대전화의 경우 02-1331)을 누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과 인권상담이 가능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O 이수진(대구지역, 2013)

개인적으로 장애인이 취업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 모니터링은 불가한지 궁금해요 ~ 모니터링과 함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단원이 모니터링 가기 전에, 피대상기관이 좀 더 사전교육이나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 (리스트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 사전에 공문 보낼 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첨부하면 안되나요?^^) 작년 모니터링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다가올해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조원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들, 여러모로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할때, 구별로 구분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실 모니터링을 할때 한 조가 동구, 서구 이렇게 하면 거리적, 시간적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예 조별 장소를 정할 때, 구를 나눠서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모니터링을 했던 곳에 사후확인을 하는 과제는 꼭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모니터링 과제가 더 다양하면 좋겠어요.(학교, 법률기관 등) ⇒민간기관보다는 공적기관 중심으로. 모니터링 시행해서, 민간기관으로 점차 확충했으며 좋겠습니다 ^^*

O 정동환(대구지역, 2010~2013)

법률기관(법원, 검찰청, 경찰서, 치안센터 등) 및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난번에 모니터링 한 기관에서도 재 모니터링이 필요함.(회신에 대해 개선여부 등 확 인이 필요함) 청각장애인의 요구에 체크리스트 항목이 추가되지 않음에 더욱 아쉬웠음.

모니터링 실시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전 및 공문서 연락으로 인해 적극적인 협조속에 무사히 잘 마쳤음. 모니터링 실시 전에 모니터링 방법과 예절 교육이 필요함. 작년까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107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지 모니터링 사전교육에 빠짐없이 적극적인 참여해왔었는데 올해는 일정이 맞지 않아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음. 일정과 시간을 서로 맞추어서 정한 날에 참여했으면 좋겠음.

O 채경훈(대구지역, 2012~2013)

올해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제 개인적으로도 좀 더 배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조사대상 기관에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기관도 있지만, 비협조적인 기관들도 많았습니다. 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모니터링을 했었지만 의료기관 중에 한방병원은 조사할 것도 없을 만큼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한방병원도 같을 거라생각합니다. 한방병원이 좀 더 바뀌었음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팀장을 했는데 조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O 김성곤(구미지역, 2013)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관심과 편견이 여전히 지나치다는 것을 깨닫고 또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선 모니터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기관들의 특징을 두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곳은 병원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장차법 기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기본적인 장애인 화장실 시설 자체가 없었던 곳도 있었고 어떤 병원은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팻말은 있지만 화장실로 들어가는 복도가 너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은 승강기 같은 이동수단이 없는 2층이라 휠체어를 타고서는 병원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곳도 있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담당자는 자신의 그분을 안고 올라간다고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장차법과 장애인의 인권 등에 대한 홍보와 의식 개선 사업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그나마 시설의 수준과 장차법에 대한 의식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108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이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시청, 청소년 시설, 공립 도서관 등은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들의 장차법을 대하는 형식적인 태도는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서관마다 시행하고 있는 책배달 서비스와 도서관 홈페이지의 책 읽어주는 기능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도서관 측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서관 같은 공적 기관이 지역 장애인 센터와정보를 공유하면 이용 실적이 훨씬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장애인 센터와 별다른 연계성을 가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간단한 수화서비스 연계프로그램도 전무함 상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장차법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제 주변의 사람들과 제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장차법을 소개해주고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했다는 것도 작은 보람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인권위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O 김영준(경주지역, 2011~2013)

2013년 모니터링을 위해 수고하신 덕택에 경주지역 활동을 무사히 잘 마쳐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정성껏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한 것 중에 먼저 금융업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경주지역에 신한은행의 예를 들면 모니터링 전에는 주출입구 경사로의 기울기가 상당히 높았는데 모니터링 후 편의증진법에 따라 경사로 기울기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신한은행 측에 장애인주차장이 미흡하다고 권고사항으로 남기고 왔지만 앞으로 시정해서 잘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업소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규정에 적합한 곳이 잘 없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업소의 장애인화장실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A금융기관과 A마트는 같은 장소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항상 복잡합니다. A금융기관 직원들도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자주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단속계고장을 붙이고 사진촬영을 하면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주차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랍니다.

A마트 계산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계산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음성안내가 되는 계산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시각장애인들도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직접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 경주점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였을 때 마트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하고 수시로 과태로 부과한다는 방송과 함께 장애인주차장 관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경주지역 수련시설 중 화랑교육원의 모니터링 사항을 요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리프트가 계단에 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리프트가 너무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수직리프트와 계단에 경사로 리프트가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110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변가라 가면서 설치되어 있었지만 계단에 설치된 경사로 리프트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도 따르고 해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경주시와 잘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수직 리프트를 만들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천년고도 경주 문화유산때문에 경사로 리프트를 설치할수밖에 없었다는 직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둘째-장애인화장실이 규정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리프트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어 보기에만 좋게 해 놓았을 뿐 이용실적에는 불편함을 초래했고 장애인화장실에는 휠체어가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을 정도로 규정에 부적합 했습니다.

다음은 경주지역의 해수욕장 모니터링결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경주지역 해수욕장 4곳을 모니터링 했지만 휠체어로 이동해서 바닷가 근처까지 갈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곳도 경주시 장애인단체에서 경주시와 협의해서 만들어낸 편의시설 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곳도 휠체어를 타고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갈수는 있었지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무엇인지는 알고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를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차원에서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행정이 단순하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그들이 새로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일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 편의시설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O 황재준(대구지역, 2013)

활동에 대한 개인적 소감

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알게 된 시기는 2012년 3월초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 다. 자세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면서 이것은 꼭 하고 싶으며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 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작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약 252만명이며 인구 대비 5.6%, 그리고 장애인 중 후천성 장애비율이 90%에 해당된다는 어떤 봉사단체의 교육이 기억이 오래남아 있으며 우리 가족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박혀있어 장애인 시설물 개선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모집에 지원하고 당당히 합격하여 올해 모 니터링 활동을 나름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가장 큰 활동소감은 장차법 시 행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물이 많이 부족하며 보완이 많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그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의 지도 보이며 앞으로 나아지겠다는 희망을 많이 보았으나, 민간시설물은 의지나 의식 도 부족해 보여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니터링 활동들을 확대 시행하길 바라며 더불어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장차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많이 시행하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정 착화되는데 나의 작은 노력들이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등 의무제공 기관에 바라는 점

모니터링 후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후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한번에 보완하기 보다는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보완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계획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링단 운영 및 과제등에 대한 의견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수검기관(업체) 선정시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많은 장소나 이용 가능성이 많은 기관 위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 운영을 확대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활동중 대구의 병원수는 많으나 모니터링단 인원 및 활동수가 부족하여 전체 병원수 대비 모니터링 병원수가 아주 미흡하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112 >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다는 생각이며 이런 활동으로는 장차법 정착화 및 의식 변화에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모니터링단 구성시 구별로 인원 선정 및 활동도 검토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니터링단 다수가 장애인이다 보니 일단 이동수단이 좋지 않아 지하철 주변을 선호하게 되며 교통이 열악한 지역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느낌을 받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어 봅니다. 구별로 하면 이동거리나 시간도 절약되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밖의 의견

모니터링 이행 모니터링 활동은 매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매년 마지막 활동달은 과년도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수검기관이 실천 불가능한 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책자를 발행시 뒷부분에는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주요 설비들의 사진 첨부를 요청드립니다. 모니터링 활동을하다보면 아직까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담당자들이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설비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는 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책자가 각 기관및 단체에 발송되면 교육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책자를 발행시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시설 단체의 시설물 사례를 수록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장차법 정착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O 2013년 5월 모니터링 활동내역

활동 모둠	이름	장애 유형	모니터링 대상기관	전화	팩스	모니터링 일시
1팀 (대구)	김정자 김운용 송재동 원성필	지체 뇌병변			803-3030 661-3030	2013. 5. 23
2팀 (대구)	박만수 이민호 황재준	지체 시각	경상북도청/북구 연암로 40 대구 북구청/북구 옥산로 65	959-0114 665-2000	953-9113 665-3030	2013. 5. 31
3팀 (대구)	박미라 신태선 정홍규 채경훈	지체 시각	대구 수성구청/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대구 동구청/동구 아양로207	666-2000 662-2000	666-2219 662-2288	2013. 5. 21
4팀 (대구)	김홍완 정동환 이경수	청각	대구 서구청/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 남구청/남구 이천로 51	663-2000 664-2000	663-3030 664-3030	2013. 5. 20
5팀 (대구)	김세령 박현경 이수진	청각	대구달서구청/달서구 학산로 45 대구달성군청/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667-2000 668-2000	636-1251 668-3030	2013. 5. 15
6팀 (경주)	김영준 박귀룡 이삼희 이승협 조병기	지체 시각	경주시청/경주시 양정로 260 감포읍 사무소/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8길14-8 안강읍 사무소/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47 건천읍 사무소/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06	054-779-8585 054-779-8009 054-779-8042 054-779-8095	760-7600 760-7451 760-7552 760-7453	2013. 6. 3, 6. 5
7팀 (포항)	김용진 서은주	지체	포항시청/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 남구청/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포항 북구청/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054-270-8282 054-240-7114 054-270-7114	270-2225	2013. 5. 21
8팀 (상주)	김진숙 설의자 이영범 정명관	지체	상주시청/상주시 상산로 223 함창읍 사무소/상주시 함창읍 함창중앙로 135	054-533-2001 054-537-8901	541-6081	2013. 5. 27
9팀 (문경)	김옥현 김이래	지체	문경시청/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읍 사무소/문경시 문경읍 청운로 55 가은읍 사무소/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123	054-552-3210 054-571-0585 054-571-7601	550-6309 550-6701 550-6702	2013. 5. 20
10팀 (예천)	김형래 장봉기	지체	예천군청/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읍 사무소/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	054-654-3801 054-650-6601	654-5136 650-6781	2013. 5. 20
11팀 (구미)	김성곤 여경수	_	구미시청/구미시 송정대로 55 고아읍사무소/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622번지	054-480-6114 054-481-3301	452-5529 480-6972	2013. 5. 24
12팀 (울진)	김순예 이연희	_	울진군청/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읍 사무소/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81-2	054-782-1501 054-789-4100	789-6309 789-4138	2013. 5. 27

O 2013년 6월 모니터링 활동내역

활동 모둠	이름	장애 유형	모니터링 대상기관	전화	팩스	모니터링 일시
1팀 (대구)	김정자 김운용 송재동 원성필	지체 뇌병변	안심 요양병원/동구 안심로41길 50 노아 요양병원/중구 국채보상로1 39길 41 라온 치괴병원/남구 성당로 2 노아 한방병원/중구 국채보상로139길 41	960-1000 763-0200 629-1900 763-0200	963-5559 252-7494 629-1906 252-7494	2013. 6. 17
2팀 (대구)	박만수 이민호 황재준	지체 시각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중구 달성로 56 경북대학교치과병원/중구 달구벌대로 2175 참편한 요양병원/북구 동북로 225 신통 요양병원/북구 동북로 83	250-7114 200-5114 958-0025 793-0000	250-7795 958-0028 383-9103	2013. 7. 3, 7. 4, 7. 12
3팀 (대구)	박미라 신태선 정홍규 채경훈	지체 시각	경북대학교병원/중구 동덕로 130 미르치과병원/중구 공평로 12 제일 한방병원/수성구 동대구로 397 불교 한방병원/수성구 용학로25길 6	420-5114 212-1000 740-0100 780-1010	426-9517 212-1100 740-0105 784-6184	2013. 6. 17, 6. 19
4팀 (대구)	김홍완 정동환 이경수	청각	운경의료재단 곽병원/중구 국채보상로 531 덕영 치과병원/중구 국채보상로 511 아주존 요양병원/서구 서대구로 194, 3층 새사랑 요양병원/서구 팔달로 176, 2,3층,4-5층	605-3771 256-2145 211-9000 351-8778	253-3017 252-2875 561-2119 352-8778	2013. 6. 17, 6. 19
5팀 (대구)	김세령 박현경 이수진	청각	대구보훈병원/달서구 월곡로 60 대구경상요양병원/달서구 달구벌대로 1762 휴요양병원/달서구 성당로 215, 3층 라온치과병원/달서구 월배로 170, 5,7,8층	630-7000 620-7300 652-2220 642-1600	630-7089 623-1177 652-2221 638-1650	2013. 7. 15
6팀 (경주)	김영준 박귀룡 이삼희 이승협 조병기	지체 시각	굿모닝병원/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7 현대병원/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51 남산요양병원/경주시 금성로 281, 2층 청하요양병원용강점/경주시 유림로13번길 155	054-741-1212 054-745-8118 054-773-8500 054-749-0002	741-1216 744-7578 773-8506 749-6677	2013. 6. 17, 6. 18
7팀 (포항)	김용진 서은주	지체	경상북도 포항의료원/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의료법인인산의료재단 선린요양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로 27 미르치과병원/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88 선린한방병원/포항시 북구 대신로 27	054-245-0112 054-245-6436 054-277-2800 054-245-6100	247-0559 0502-245 -6200 277-5633 053-289 -0620	2013. 6. 13
8팀 (상주)	김진숙 설의자 이영범 정명관	지체	경상북도김천의료원/김천시 모암길 24 김천제일병원/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신애길 100-10 김천요양병원/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3	054-432-8901 054-420-9300 054-420-7200 054-430-0202	433-8254 420-9400 437-6005	2013. 6. 25
9팀 (문경) 10팀 (예천)	김옥현 김이래 김형래 장봉기	지체	영주기독병원/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80 영주가톨릭병원/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176 청하요양병원/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24번길 91 인애가영주한방병원/경상북도 영주시 지천로 164	054-635-6161 054-639-8100 054-630-9900 054-634-3007	635-6172 639-8200 630-9999 637-6060	2013. 6. 17
11팀 (구미)	김성곤 여경수	_	구미차병원/구미시 신시로10길 12 구미시립 노인요양병원/구미시 야은로 37-1 구미예치과병원/구미시 인동가산로 28, 2층 인제한방병원/구미시 송원동로 65	054-450-9700 054-440-1000 054-476-7928 054-453-1444	450-9883 440-1051 476-7931 453-5666	2013. 6. 27, 6. 28
12팀 (울진)	김순예 이연희	_	울진군의료원/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울진중앙병원/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57 오차드요양병원/울진군 후포면 동해대로 441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785-7026 787-1212 788-9090 785-7000	785-7030 787-8449 788-9093 785-7030	2013. 5. 31

O 2013년 7월 모니터링 활동내역

활동 모둠	0름	징애 유형	모니터링 대상기관	전화	팩스	모니터링 일시
1팀 (대구)	김정자 김 운용 송재동 원성필	지체 뇌병변	중구청소년문화의집/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40 대구학생문화센터/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81	661-3278 550-7188	421-0184 550-7119	2013. 7. 19
2팀 (대구)	박민수 이민호 황재준	지체 시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관 별별체험관/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로 30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180	550-0210 656-6655	653-2054	2013. 7. 24
3팀 (대구)	박미라 신태선 정홍규 채경훈	지체 시각	달서구청소년수련관/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420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34길 16	639–7101 661–1318	639–7106 661–1320	2013. 7. 19
4팀 (대구)	김홍완 정동환 이경수	청각	북구청소년회관/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 수성구청소년수련관/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100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대구시 달성군 기창면 가창로 220길	384-1318 761-9400 765-1388	665–2199 761–9347 765–1390	2013. 7. 15, 7. 22
5팀 (대구)	김세령 박현경 이 수 진	청각	동구청소년문화의집/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길 20 서구청소년수련관/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122	257-9170 572-2453	257-0109 572-2458	2013. 7. 23
6팀 (경주)	김영준 박귀룡 이삼희 이승협 조병기	지체 시각	경주청소년수련관/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131 화랑교육원/경북 경주시 새남산길 62	054-779-6173 054-748-1112	760-7543 748-0624	2013. 7. 18
7팀 (포항)	김용진 서 은주	지체	포항청소년수련관/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구룡포청소년수련원/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명월길 51	054-280-9413 054-270-5808	270–3070 284–6687	2013. 7. 19
8팀 (싱주) 9팀 (문경) 10팀 (예천)	김진숙 설의자 이영범 정명관 김옥현 김이래 김형래 징봉기	지체	문경청소년문화의집/경북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청소년수련관/경북 문경시 휴양림길 180 예천군청소년수련관/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상주청소년수련관/경북 상주시 북상주로 24-42	054-550-6655 054-553-4100 054-650-6425 054-535-8594	550–6659 553–4200 650–6429 537–6739	2013. 7. 24, 7. 27
11팀 (구미)	김성곤 여경수	_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경북 구미시 상사서로4길 10 구미시선신청소년수련관/경북 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70	054-458-2010 054-482-0924	465-2050 481-6358	2013. 7. 11
12팀 (울진)	김순예 이연희	_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47 울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054-789-6704	789–3270	2013. 7. 30

O 2009~2013년 모니터링 단원

2009 2010 2011 2012 2013 1		0000		0011	0010	0040
2 김동희 김갑연 기윤석 김영주 김운용 김선희 김동희 김다야 김운용 김정자 4 김태우 김세령 김도균 김정자 김홍환 5 나호열 김시형 김선독 박미라 박만수 6 박정희 김연희 김세령 박현경 박미라 7 송두용 김태우 김시형 송재동 박현경 8 이준희 박원호 김인희 신태선 송재동 9 장미래 박종건 김문용 안영찬 신태선 10 전근배 송두용 김유리 원성필 원성필 11 조민제 신태선 김재구 이건열 이경수 12 엄연욱 송두용 이경수 이민호 13 원생필 신미항 이민호 이수진 14 윤수연 신태선 이재수 정동환 15 이선옥 원성필 장진호 정홍규 16 이수진 유혜림 정동환 채경훈 17 이영미 이건열 정홍규 황재준 18 이준희 이민희 조성규 경주-대명준 19 이효식 이영미 제경훈 경주-대명종 20 장미래 이현교 경주-김영준 경주-다귀룡 20 장미래 이현교 경주-김영준 경주-이승협 21 장진호 이효식 이영미 경주-이승협 경주-장병기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이승협 경주-정병과 23 정동환 장진호 경주-대의 경주-이승협 24 태소면 정동환 장진호 경주-대의 경주-이승협 25 홍해주 정혜민 상주-김홍미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27 조세환 상주-정명관 문경-대육해 31 김태우 예찬-이성일 구미-김성곤 28 조선국 경주-비구를 생주는 이용법 31 김태우 예찬-김형래 예찬-김형래 31 김대우 예찬-김형래 여천-김형래 32 경주-대상희 경주-대우를 상주-정병관 23 경주-경망주 당근이상림 상주-정명관 24 태소면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실의자 35 홍해주 정혜민 상주-김흥미 상주-이영범 26 조선국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27 조세환 상주-경명관 문경-대육해 31 김대우 예찬-김형래 여천-김형래 31 김대우 예찬-이성일 구미-김성구 32 경주-대상희 안동-이당희 포항-김용진 34 경주-대상희 안동-이대호 물진-이단희 35 경주-이상희 안동-이대호 물진-이단희 36 경주-의상의 안동-이대호 물건-이단희 37 상주-김진숙	-		•			
3 김인희 김동희 김다야 김운용 김정자 김홍완 김대우 김세령 김도교 김정자 김홍완 김홍완 김선두 김선자 김홍완 김선류 김선희 박민수 학점회 김신희 김신희 박민경 박미리 박민수 학점회 김신희 김세령 박현경 박미리 학한경 각미리 각이하 숙자동 박현경 김선희 산태선 숙재동 박현경 건문용 안영찬 산태선 선태선 건문용 안영찬 산태선 건문용 안영찬 산태선 건대선 김재구 이건열 이경수 이민호 이우진 건대선 김재구 이건열 이경수 이민호 인민호 건대선 건대권 건대원 건대한 건대한 건대한 건대한 건대한 건대권 건대한 건대한 건대권			.			
4 김태우 김세형 김도균 김정자 김홍완 5		!	1 1 1 1 1 1			i
5 나호열 김시형 김선독 박미라 박민수 6 박성희 김언희 김세형 박현경 박미라 7 송두용 김태우 김신희 산태선 송재동 8 이준희 각원호 김인희 산태선 송재동 9 장미래 박종건 김오용 안영찬 신태선 10 전근배 송두용 김경우 신태선 신태선 11 조민제 신태선 김재구 이건열 이경수 이민호 12 업면목 송두용 이경수 이민호 이연수 이민호 13 원성필 신미향 이민호 이수구 이민호 이우구 14 윤수면 신대선 이재숙 정동환 15 이선의 전우환환 장진호 정통과 청종환 16 이수진진 유혜림 정동환 청진호 경주-김영준 경주-김영준 17 이영미 이준희 조용과 湖종과준 경주-김영준 경주-김영준 경주-이상희 경주-이상희 경주-이상희 경주-					!	
6 박정희 김인희 김세령 박현경 박미라 경우 승규용 김태우 김시형 송재동 박현경 이준희 박원호 김인희 신태선 송재동 박현경 이준희 박원호 김인희 신태선 송재동 9 장미래 박종건 김운용 안영찬 신태선 10 전근배 송두용 김유리 원성필 원성필 이경수 112 염연욱 송두용 이경수 이민호 이수진 12 염연욱 송두용 이경수 이민호 이수진 13 원성필 신비향 이민호 이수진 14 윤수연 신태선 이재숙 정동환 전후 15 이선옥 원성필 장진호 정흥규 16 이수진 유혜림 정동환 채경훈 17 이영미 이건열 정흥규 황재준 18 이준희 이민희 조성규 경주-김영준 19 이효식 이영미 제경훈 경주-박귀룡 경주-대상희 경주-작병기 강진호 영향하 경우 11 장진호 이호식 경주-바귀룡 경주-이승협 상주-김이숙 경우 경우 경우 경우 장미래 경우 경우 12 청구 설계 경우 경우 12 청구 설계 경우 12 청구 학계 경우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 3주 4명과 경주 3주 4명과 25 흥혜주 정혜민 상주-18의 상주-4명과 26 종혜주 정혜민 상주-18의 상주-4명과 27 조재환 상주-전명과 문경-1의래 문경-1의래 무경-1의래 무경-1의래 무경-1의래 29 차수용 문경-1점후 연형 보충구 경명과 30 최민식 에선-1점의 대선-1점의 기업로 29 추구 11 집대우 에천-1점의 어전-1점의 11 김대우 에천-1점의 어전-1점의 11 김대우 에천-1점의 어전-1점의 11 김대우 에천-1점의 어전-1점의 11 김대우 에전-1점의 무경-1점으로 26 경주-1대룡 연동-감정희 구미-이경수 경주-바귀룡 안동-1점의 원진-1점의 31 김대우 에전-1점의 구미-1점상고 32 경주-1대룡 연동-감정희 구미-이경수 경주-바귀룡 안동-1점의 물진-1건성교 34 경주-이승협 공주-지원의 모향-1점의 35 경주-1점의 안동-1점의 포항-시은주 37 상주-1집식 4 경주-조병기 36 공후 24 원지 24 본자 25 본자 24 본자		;		i		:
7 송두용 김태우 김시형 송재동 박현경 8 이준희 박원호 김언희 신태선 송재동 9 장미래 박종건 김운용 안영찬 신태선 10 전근배 송두용 김유리 원성필 원성필 원성필 인경수 이민호 이무진 이모호 이무진 이보호 이무진 이보호 이무진 이보호 이우진 이보호 이우진 이보호 이무진 이보호 이무진 이보호 이무진 이보호 이우진 이보호 이우진 이보호 이무진 이보호 이우진 이보호 이무진 이보호 이우진 이보호 이보호 이우진 이보호 이보호 이우조 이오후 이보호 이우조 이오후 이오후 이보호 이오후 이오후 이오후 이오후 이오후 이오후 이오후 이오후 이오후 이외후 이오후 이외후 이오후 이오후 이외후 이오후 이오후 이의주 이외환 이오후 이오후 이외후 이오후 이외환 이오후 이외환 <t< td=""><td>5</td><td></td><td></td><td></td><td></td><td>박만수</td></t<>	5					박만수
8					:	
9 장미래 박종건 김운용 안영찬 신태선 10 전근배 송두용 김유리 원성필 원성필 11 조민제 신태선 김재구 이건열 이경수 12 염연욱 송두용 이경수 이민호 13 원성필 신미항 이민호 이수진 14 윤수연 신태선 이재숙 정동환 15 이선옥 왕진호 정흥규 16 이수진 유혜림 장동한 채경훈 17 이영미 이건열 정흥규 황재준 18 이준희 이민희 조성규 경주-김영준 19 이효식 이영미 채경훈 경주-박귀룡 20 장미래 이현균 경주-김영준 경주-이상희 경주-이상희 경주-이상희 경주-이상희 경주-이상희 경주-이상형 상주-김인숙 21 장진호 이효식 장미래 경우 경주-이상희 경주-이승협 상주-김연숙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이상희 경주-이상희 상주-김연숙 24 태소연 정동환 장진호 경주-이승협 상주-김연숙 25 홍혜주 정혜민 상주-김흥미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문경-김옥현 27 조재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익해 문경-김익해 당동이 경주-기상후 경주-이수형의 31 김태우 예천-김형래 구미-리성곤 32 경주-미상희 경주-미승협 안동-강경희 구미-김성곤 33 경주-막귀룡 연주-이상희 원진-김형래 경주-김영주 34 경주-미상희 연장-김연역 양동-김시의 문경-김이래 문경-김어리 경주-미상형의 경주-이상희 기화리와 기화리와 기화리를 당당하는 강동의 구미-리성곤 35 경주-막귀룡 안동-김시의 물진-김순에 36 경주-이상희 안동-김시의 포항-김용진 37 상주-김진숙	7	송두용			.	박현경
10 전근배 송두용 김유리 원성필 원성필 11 조민제 신태선 김재구 이건열 이경수 12 엄연욱 송두용 이경수 이민호 13 원성필 신미향 이민호 이수진 14 윤수연 신태선 이재숙 정동환 15 이선옥 원성필 장진호 정흥규 16 이수진 유혜림 정동환 채경훈 17 이영미 이건열 정흥규 황재준 18 이준희 이민희 조성규 경주-김영준 19 이효식 이영미 채경훈 경주-입영준 19 이효식 이영미 채경훈 경주-입영준 20 장미래 이현균 경주-김영준 경주-이상희 21 장진호 이효식 경주-김영준 경주-이상희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 경주-김영준 경주-이상희 23 정동환 장진호 경주-이승협 상주-김진숙 24 태소연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이영범 25 홍혜주 정혜민 상주-김흥미 상주-이영범 26 조천국 청주-정명관 문경-김이래 문경-김익현 27 조재한 상주-정명관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무경-김영현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무경-김영리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에천-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이승협 경주-이연희 포항-김용진 34 경주-이승현 경주-막기룡 인동-김시일 물진-김순예 35 경주-이승현 경주-의성의 모향-김용진 36 경주-이승현 포항-김용진 37 상주-김진숙	8	이준희	박원호	김언희	신태선	송재동
11 조민제 신태선 김재구 이건열 이경수 12 엄연욱 송두용 이경수 이민호 13 원성필 신미향 이민호 이수진 14 윤수연 신태선 이재숙 정동환 15 이선옥 원성필 장진호 정흥규 16 이수진 유혜림 정동환 채경훈 17 이영미 이건열 정흥규 황재준 18 이준희 이민희 조석규 경주-김영준 19 이효식 이영미 채경훈 경주-김영준 19 이효식 이영미 채경훈 경주-김영준 20 장미래 이현균 경주-김영준 경주-이삼희 21 장진호 이효식 경주-김영준 경주-이삼희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이승현 상주-김진숙 23 정동환 장진호 경주-이승현 상주-김진숙 24 태소연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이영범 25 흥혜주 정혜민 상주-김흥미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27 조재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이래 문경-김의현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의현 29 차수용 문경-김승리 문경-김이래 공연-이상의 31 김대우 예찬-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리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비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상희 경주-작병기 모양-김용진 35 경주-이승현 경주-의연희 모향-김용진 36 경주-이승현 경주-김용지 모향-김용진 37 상주-김진숙	9	장미래	박종건	김운용	안영찬	신태선
12 임연욱 송두용 이경수 이민호 13 원성필 신미향 이민호 이수진 14 윤수연 신태선 이재숙 정동환 15 이선옥 원성필 장진호 정흥규 16 이수진 유혜림 정동환 채경훈 17 이영미 이건열 정흥규 황재준 18 이준희 이민희 조성규 경주-김영준 19 이효식 이영미 채경훈 경주-박귀룡 20 장미래 이현균 경주-김영준 경주-이삼희 21 장진호 이효식 경주-리영준 경주-이삼희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이삼희 경주-조병기 23 정동환 장진호 경주-이삼희 경주-조병기 24 태소연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실의자 25 흥혜주 정혜민 상주-김흥미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27 조재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익한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익한 29 차수용 문경-신동자 에천-강봉기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에천-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막기룡 33 경주-박귀룡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4 경주-이승희 연주-이승희 모장-김용인 35 경주-이승희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6 경주-이승희 안동-이대호 물진-이연희 36 경주-이승희 모장-김징진 37 성주-이승희 모장-김징진 38 경주-이승희 모장-김징진 39 상주-김진숙	10	전근배	송두용	김유리	원성필	원성필
13 원성필 신미항 이민호 이수진 14 윤수연 신태선 이재숙 정동환 15 이선옥 원성필 장진호 정홍규 16 이수진 유혜림 정동환 채경훈 17 이영미 이건열 정홍규 황재준 18 이준희 이민희 조성규 경주-김영준 19 이효식 이영미 채경훈 경주-박귀룡 20 장미래 이현균 경주-김영준 경주-이삼희 21 장진호 이효식 경주-1대통 경주-이삼희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이삼희 경주-조병기 23 정동환 장진호 경주-이승희 상주-김진숙 24 태소연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설의자 25 홍혜주 정혜민 상주-김흥미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27 조재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익현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익현 29 차수용 문경-신동자 에천-장봉기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에전-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기승효 연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학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수예 34 경주-이승희 경주-조병기 모향-김용인 35 경주-이승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6 경주-이승희 전주-조병기 포항-김용진 37 성주-김진숙 38 상주-김진숙	11	조민제	신태선	김재구	이건열	이경수
14 윤수연 신태선 이재숙 정동환 15 이선옥 원성필 장진호 정흥규 16 이수진 유혜림 정동환 채경훈 17 이영미 이건혈 정흥규 황재준 18 이준희 이민희 조성규 경주-김영준 19 이효식 이영미 채경훈 경주-임영준 20 장미래 이현균 경주-김영준 경주-이삼희 21 장진호 이효식 경주-비귀룡 경주-이승협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임영준 경주-이승협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이승협 상주-김진숙 23 정동환 장진호 경주-이승협 상주-김진숙 24 태소연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실의자 25 홍혜주 정혜민 상주-김흥미 상주-이영범 26 조천규 상주-이영범 문경-김이리 문경-김이현관 27 조채환 소주-정명관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29 차수용 군경구-이승의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td>12</td> <td></td> <td>엄연욱</td> <td>송두용</td> <td>이경수</td> <td>이민호</td>	12		엄연욱	송두용	이경수	이민호
15	13		원성필	신미향	이민호	이수진
16	14		윤수연	신태선	이재숙	정동환
17	15		이선옥	원성필	장진호	정홍규
18	16		이수진	유혜림	정동환	채경훈
19	17		이영미	이건열	정홍규	황재준
20 장미래 이현균 경주-김영준 경주-이삼희 21 장진호 이효식 경주-박귀룡 경주-이삼희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이삼희 경주-조병기 23 정동환 장진호 경주-이승협 상주-김진숙 24 태소연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실의자 25 홍혜주 정혜민 상주-김홍미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27 조재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익현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익현 29 차수용 문경-신동자 에천-장봉기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예천-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비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김진석 39	18		이준희	이민희	조성규	경주-김영준
21 장진호 이효식 경주-박귀룡 경주-이승협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이삼희 경주-조병기 23 정동환 장진호 경주-이승협 상주-김진숙 24 태소연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설의자 25 홍혜주 정혜민 상주-김흥미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문경-김옥현 27 조재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익력 문경-김익력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29 차수용 문경-신동자 에천-장봉기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예천-김형래 예천-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이상희 포항-김순예 34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김용진 37 상주-김진석 38 상주-김인석 39	19		이효식	이영미	채경훈	경주-박귀룡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이삼희 경주-조병기 23 정동환 장진호 경주-이승협 상주-김진숙 24 태소연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설의자 25 홍혜주 정혜민 상주-김흥미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문경-김옥현 27 조재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옥현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29 차수용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예천-감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이삼희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물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석 38 상주-이영범	20		장미래	이현균	경주-김영준	경주-이삼희
23 정동환 장진호 경주-이승협 상주-김진숙 24 태소연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설의자 25 홍혜주 정혜민 상주-기흥미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27 조재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익력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29 차수용 문경-신동자 에천-장봉기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예천-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비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식 38 상주-이영범	21		장진호	이효식	경주-박귀룡	경주-이승협
24 태소연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설의자 25 홍혜주 정혜민 상주-김흥미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27 조재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옥현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29 차수용 문경-신동자 에천-장봉기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예천-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비귀룡 안동-리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희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김진식 39 상주-이영범	22		전근배	장미래	경주-이삼희	경주-조병기
25 홍혜주 정혜민 상주-김홍미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문경-김옥현 모경-김옥현 모경-김익현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모경-김이래 모경-김이래 모경-김이래 모경-김이래 모경-김이래 모경-김이래 모경-김이래 모경-김이래 무경-김이래 무경-김이래 무경-김형래 에천-김형래 에천-김형래 에천-김형래 에천-김형래 에천-이성일 구미-김성곤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박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상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김진식 39	23		정동환	장진호	경주-이승협	상주-김진숙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27 조재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옥현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29 차수용 문경-신동자 에천-장봉기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예천-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박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상주-김진숙 38 상주-이영범	24		태소연	정동환	경주-조병기	상주-설의자
27 조재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옥현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29 차수용 문경-신동자 에천-장봉기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예천-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박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김진식 39 상주-이영범	25		홍혜주	정혜민	상주-김홍미	상주-이영범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29 차수용 문경-신동자 에천-장봉기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예천-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박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김진식 39 상주-이영범	26			조성규	상주-이영범	상주-정명관
29 차수용 문경-신동자 에천-장봉기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예천-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바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이영범	27			조재 환	상주-정명관	문경-김옥현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예천-김형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박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이영범	28			조현욱	문경-김이래	문경-김이래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박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이영범	29			차수용	문경-신동자	에천-장봉기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3 경주-박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이영범	30			최민석	예천-김형래	예천-김형래
33 경주-박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김진식 39 상주-이영범	31			김태우	예천-이성일	구미-김성곤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김진식 39 상주-이영범	32			경주-김영준	안동-강경희	구미-여경수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김진식 39 상주-이영범	33			경주-박귀룡	안동-김시일	울진-김순예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7 상주-김진숙 38 상주-김진식 39 상주-이영범	34			경주-이삼희	안동-이대호	울진-이연희
37 상주-김진숙 38 상주-김진식 39 상주-이영범	35			경주-이승협		포항-김용진
38 상주-김진식 39 상주-이영범	36			경주-조병기		포항-서은주
39 상주-이영범	37			상주-김진숙		
	38			상주-김진식		
40 상주-정명관	39			상주-이영범		
	40			상주-정명관		